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17 호】

2014년 10월 17일 (금)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60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61호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303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YMCA일산청소년수련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72
고양시 고시 제2014-304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73
고양시 고시 제2014-3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7호선외 2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90
고양시 고시 제2014-3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5호선(샛말취락도로 확장공사)} 사업 실시계획 고시	120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1381호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주민공람·공고	123
고양시 공고 제2014-1392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의 공고	128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 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등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 등에 대해서 정상 참작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 나.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안 제2조제1항)
- 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안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

다.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징계의 감경 제한사유 추가(안 제5조 제1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인적자원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팀 (031-8075-238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내부종결 처리”를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별표 1 적용”을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별표 1 적용”을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로, “성희롱”을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 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 · 성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직위 · 성명	인적자원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성명 · 전화	김 원 선 (8075-2387)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금품·향응수수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시 : 해임이상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과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품위손상 등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금 등 횡령		○						
나. 공금 등 유용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다.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사. 음주운전								횡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 또는 신분은폐, ‘중상해’의 인적피해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 면허정지(0.05% ~ 0.10%미만) 1회							○	
2) 면허취소(0.10%이상) 1회						○		
3)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2회					○			
4)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회			○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6)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7)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사망사고 발생			○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 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아.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2)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 서 운전						○		
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 서 음주운전					○			
3)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차.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공무시간 중인 경우						○		
2)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	
카. 성 관련 범죄행위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2) 성 폭력, 강제추행			○					
3) 성매매					○			
4) 성희롱, 간통						○		
타.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		
파.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2) 강도 등		○						
하.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	
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		
바.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	
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 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 수					○		
아.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4.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			
나.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 (월 3회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과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중요 비밀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조화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누설·유출						○	
6.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위조·변조		○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7. 소송수행 관련							
가.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	

○ 비 고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 결과를 기록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p> <p>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u>공적</u>, <u>뇌우치는 정도</u>,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과 별표 1의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 사건 처리기준) ① <u>시장은</u>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u>내부종결 처리</u></p> <p>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u>별표 1적용</u></p> <p>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사항 : <u>별표1 적용</u></p>	<p>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p> <p>①----- ----- ----- ----- <u>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 사건 처리기준) ① <u>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u> ----- ----- -----.</p> <p>1. ----- : <u>내부종결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p> <p>2. ----- ----- ----- -- <u>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p> <p>3. ----- ----- : <u>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p>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규칙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4. (생략)

② (생략)

제5조 (징계의 감경)①-----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

----- 성희룡, 「공직자윤
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
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
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
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
경할 수 없다.

1.~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누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련도, 규
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
리의 적극성,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사. 음주운전								횡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 또는 신분은폐, '중상해'의 인적피해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사. 음주운전								횡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 또는 신분은폐, '중상해'의 인적피해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0.05% ~ 0.10%미만) 1회							○			1) 음주운전(0.05% ~ 0.10%미만) 1회							○		
2) 음주운전(0.10%이상) 1회						○				2) 음주운전(0.10%이상) 1회						○			
3) 음주운전(0.05%이상) 2회					○					3) 음주운전(0.05%이상) 2회					○				
4) 음주운전(0.05%이상) 3회		○								4) 음주운전(0.05%이상) 3회		○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6)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6)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7)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신분은폐, '중상해'의 인적피해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7)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사망사고 발생			○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사망사고 발생			○					
	인적피해 발생				○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아.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아.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교통사고 후 도주한경우	인적피해 발생					○				1) 교통사고 후 도주한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2)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2)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하여 징계		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			
2)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				
3)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3)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차.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차.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근무시간 중인 경우					○					1) 근무시간 중인 경우					○				
2) 그 밖의 근무시간 외의 경우						○				2) 그 밖의 근무시간 외의 경우						○			
카. 성 관련 범죄행위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카. 성 관련 범죄행위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2) 성 폭력, 강제추행			○							2) 성 폭력, 강제추행			○						
3) 성매매					○					3) 성매매				○					
4) 성희롱, 간통						○				4) 성희롱, 간통					○				
타.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				타.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			
파.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			파.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2) 강도 등		○								2) 강도 등		○							
하. 도박 등 사행행위										하.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1항(12월 중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6.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7.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9.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0.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3.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4.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5.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2.3.]

현행규칙

□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5.]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2012.2.17., 2014.5.16.>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2012.2.17., 2014.5.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2014.5.16.>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사항 : 별표 1 적용

<개정 2014.5.16.>

제4조(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2014.5.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2014.5.16.>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개정 2010.10.15., 2014.5.16.>
2.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개정 2010.10.15., 2014.5.16.>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와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6급 이하 공무

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16.]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두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제7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0.10.15., 2014.5.16.>

②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개정 2010.10.15., 2014.5.16.>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조제목 개정 2014.5.16.>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음주운전 관련사건과 청렴의무 위반사항은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2.2.17., 2014.5.16.>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3](#)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전문개정 2010.10.15.]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 나. 법률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유사규모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부담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인 교통혼잡 해소 재원을 보충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 제명을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조정(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구 분	단 위 부담금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2천㎡미만	350원	2천㎡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2천㎡이상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천㎡ 초과 3천㎡ 이하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2천㎡이상이고, 연건부과액 50만원 미만		3천㎡ 초과 3만㎡ 이하	500원	600원	650원	750원	800원	900원	1,050원
2천㎡이상이고, 연건부과액 50만원 이상	500원	3만㎡ 초과	600원	750원	900원	1,050원	1,200원	1,350원	1,500원

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경감률 조정(안 제7조)

라. 주거용 목적 오피스텔의 부담금 경감 조항 신설(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교통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1-8075-2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 가.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 나. 승용차 5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 다.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2. 승용차요일제 :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
3. 주차장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
4. 승용차함께타기 :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5.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6. 통근버스운영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봄)

7.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1일 5회 이상 역 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 하도록 매월 5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 한다)등을 제공하는 것
9. 자전거 이용 : 전체 종사자의 10%이상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10. 경차주차구획 운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의 주차구획을 운영하는 것
11.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 월 1회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로 지정 하여 출·퇴근 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것
12. 의무휴업일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및 「고양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13.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매월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 하는 것
14.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 함께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개발제한구역(G.B내)에 위치한 시설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용 시설
3.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정수처리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우·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및 환풍시설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로 통근관리인 1명이 해당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90으로 본다.

④ 제3조에서 규정한 승용차부제 및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 까지(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통근관리인 선임)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근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근관리인은 일상 근무시간 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근관리인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이행실태 확인 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나 시설물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부제 및 승용차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 :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 4. 자전거이용 : 자전거이용신청대수의 5퍼센트 이내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 3.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의 승용차부제

제13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매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고양시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제4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
- 3. 제9조에 따른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경감신청서의 접수 및 경감률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된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된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이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수정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4년 8월 1일부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소관과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장명	교통정책과장이 창규
	팀장명	교통정책팀장 김윤재
	담당자 성명·전화	이은정 (031-8075-2915)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 후
2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500원	600원	650원	750원	800원	900원	1,050원
3만제곱미터 초과	600원	750원	900원	1,050원	1,200원	1,350원	1,5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 각종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하	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500원 × 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150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5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50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6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50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6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50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75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50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50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 후	[(150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05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500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6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770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75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90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17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05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310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2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580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35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 후	[(2,98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500원)]×교통유발계수

※ 비고 : 연도별 단위부담금 부과대상은 당해년도 8월1일부터 익년 7월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참여자	이행기준 및 조건		경감비율(%)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10
승용차 5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20
승용차 2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30
승용차요일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20
시차출근제	종사자	-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총종사자 60%이상 출근시간 조정 -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근무자는 총종사자수에는 포함하며, 이행실적에는 제외한다.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	60%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10
승용차 함께타기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참여		10
		- 전체 소속직원 소유의 승용차대수 중 참여대수에 대한 경감을 적용 -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및 이용자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이상 징수 (다만, 기업체,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5
자전거이용	종사자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자전거 이용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 구획운영	시설물소유자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의무휴업일	시설물소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이들의 휴업일을 정기적으로 이행		5
자율휴무	시설물소유자	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 이상 시행	10

※ 10부제, 5부제, 2부제,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는다.

[별표 3] 기업체연합 교통 경감기준

□ 승용차함께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p>○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p>○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명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p>○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 5% 	<p>○ 시설물의 종사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 5%

※ 승용,승합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기업체연합으로 실시한 증명서류 (기업간 계약, 운영계획 등)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통근관리인(선임, 해임, 변경) 신고서

일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사업체명	부서명			

상기와 같이 통근관리인을 (선임, 해임,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근관리인(선임, 해임, 변경) 명부

일 자	선 임			해 임			변 경			담당자 확 인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2 m^2)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나.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 종류(해당란에 경감비율 기재)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이행예정프로그램	비 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 차 출 근 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10%이상 20%미만 참여	5		
	20% 이상 참여	10		
주차장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 이용 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 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 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다. 교통량감축이행기간

○ 기간 : . . 부터 . . 까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2 m^2)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나. 경감률 결정사항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 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 차 출 근 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10%이상 20%미만 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 이용 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 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년 월 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관인)
○ ○ ○ 귀하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2)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기계식 대) (자주식 대)	종사자수	명

나. 경감신청내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당초신청	경감신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차출근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10%이상 20%미만 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 이용 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 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2 m^2)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나. 경감률 결정사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 차 출 근 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10%이상 20%미만 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 이용 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 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관인)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p> <p><u>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 제곱미터당 500원</u> <u>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부과액 50만원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 제곱미터당 350원</u> <u>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350원</u> <p><u>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u> 	<p>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p> <p><u>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u></p> <p><u>제6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로 통근관리인 1명이 해당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감대상시설물.....</u>

현행	개정안
<p>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p> <p>② 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2에 의한다.</p> <p>③ (생략)</p> <p>④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제13조에 의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⑤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및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p>	<p>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p> <p>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별표 3에 따른다.</p> <p>③ (현행과 같음) <삭 제></p> <p>④ 제3조에서 규정한 승용차부제</p>
<p>제9조(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 등)</p> <p>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p> <p>②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p>	<p>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p> <p>①소유자는.....</p> <p>.....시장에게</p> <p>② 시장은</p>

현행	개정안
<p>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해당 경감대상시설물.....</p> <p>.....</p> <p>③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④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이행실태확인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나 시설물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2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부담금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3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p> <p>.....</p> <p>.....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p> <p>.....시장에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p> <p>.....</p> <p>.....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p> <p>.....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p> <p>.....</p> <p>③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매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p> <p>①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p> <p>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해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p> <p>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별로 심의위원회를</p> <p>②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부위원장은 교통 행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p>③해당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고양시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u>제14조(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u></p> <p>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구청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행실태 확인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u>제14조(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u></p> <p><삭 제></p> <p><삭 제></p>
<p><신 설></p>	<p><u>제15조(위원의 임기)</u> 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신 설></p>	<p><u>제16조(수당 등)</u>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u>제17조(권한의 위임)</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경감신청서의 접수 및 경감률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신설>	<div>[별표 1]</div> <div>시설물의 단위부담금</div> <div>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div> <table><tr><th rowspan="2">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th><th colspan="7">연도별 단위부담금</th></tr><tr><th>2014 년</th><th>2015 년</th><th>2016 년</th><th>2017 년</th><th>2018 년</th><th>2019 년</th><th>2020 년이 후</th></tr><tr><td>2천제곱미터 이하</td><td>350원</td><td>350원</td><td>350원</td><td>350원</td><td>350원</td><td>350원</td><td>350원</td></tr><tr><td>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td><td>500원</td><td>500원</td><td>500원</td><td>500원</td><td>500원</td><td>500원</td><td>500원</td></tr><tr><td>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td><td>500원</td><td>600원</td><td>650원</td><td>750원</td><td>800원</td><td>900원</td><td>1,050 원</td></tr><tr><td>3만제곱미터 초과</td><td>600원</td><td>750원</td><td>900원</td><td>1,050 원</td><td>1,200 원</td><td>1,350 원</td><td>1,500 원</td></tr></table> <div>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 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div> <table><tr><th>시설물 각종 바닥면적의 합</th><th>부담금</th></tr><tr><td>2천제곱미터 이 하</td><td>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td></tr><tr><td>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td><td>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500원 × 교통유발계수</td></tr><tr><td rowspan="7">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td><td>2014년</td><td>[(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5년</td><td>[(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6년</td><td>[(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7년</td><td>[(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8년</td><td>[(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9년</td><td>[(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20년 이 후</td><td>[(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5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 rowspan="7">3만제곱미터 초과</td><td>2014년</td><td>[(1,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5년</td><td>[(1,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6년</td><td>[(1,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7년</td><td>[(2,1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5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8년</td><td>[(2,3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19년</td><td>[(2,5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350원))×교통유발계수</td></tr><tr><td>2020년 이 후</td><td>[(2,9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500원))×교통유발계수</td></tr></table> <div>※ 비교: 연도별 단위부담금 부과대상은 당해년도 8월1일부터 익년 7월31일 까지 적용한다.</div>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이 후	2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500원	600원	650원	750원	800원	900원	1,050 원	3만제곱미터 초과	600원	750원	900원	1,050 원	1,200 원	1,350 원	1,500 원	시설물 각종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 하	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500원 × 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 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5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1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5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3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5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35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 후	[(2,9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500원))×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이 후																																																																													
2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500원	600원	650원	750원	800원	900원	1,050 원																																																																													
3만제곱미터 초과	600원	750원	900원	1,050 원	1,200 원	1,350 원	1,500 원																																																																													
시설물 각종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 하	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500원 × 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 후	[(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5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1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5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3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5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35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 후	[(2,9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500원))×교통유발계수																																																																																		

현행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통근 버스 운영	기업체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	출·퇴근운영사 (종좌석수/총종사자수)/2] ×100의 비율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사 (종좌석수/총종사자수)/4] ×100의 비율을 적용하되 경감율은 최대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잔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잔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2부제, 승용차요일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잔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10부제, 5부제, 승용차요일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해당 요일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잔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5부제, 2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시차 출근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1시간 차이나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종사자의 50%이상에게 매월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자하철승차권 등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함께타기	- 전체 소속직원 소유의 승용차대수 중 참여대수에 대한 경감을 적용 -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00분의 10미만은 100분의 3 -100분의 15미만은 100분의 5 -100분의 20미만은 100분의 7 -100분의 25미만은 100분의 10 -100분의 30미만은 100분의 15 -100분의 30이상은 100분의 20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50이상 징수. 다만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1시간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시)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역·터미널 및 도시 철도역 셔틀버스기운행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자전거 이용	소속종사자의 5%이상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100분의 5이상 참여시 100분의 5 -100분의 10이상 참여시 100분의 10

개정안

[별표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참여자	이행기준 및 조건	경감비율(%)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출·퇴근시 모두 운영	10 20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10
승용차 5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20
승용차 2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30
승용차 요일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20
시차 출근제	종사자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총종사자 60%이상 출근시간 조정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근무자는 총종사자수에는 포함하며, 이행실적에는 제외한다.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	60%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10
승용차 함께타기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참여	10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및 이용자	-전체 소속직원 소유의 승용차대수 중 참여대수에 대한 경감을 적용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이상 징수 (다만 기업체,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10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5
자전거 이용	종사자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자전거 이용	10
대중교통 이용의날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월 4회 이상	2 5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경차주차구획운영	시설물 소유자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5 10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이들의 휴업일을 정기적으로 이행	5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	2일시행 3일시행 4일이상시행시
			5 7
			10

※ 10부제, 5부제, 2부제,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는다.

현행	개정안																								
<p>[별표2]</p> <p>기업체연합 교통 경감기준</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승용차함께타기</td></tr> <tr> <td>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td><td>참여한 기업체</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td></tr> <tr> <td colspan="2">□ 통근버스 공동운영</td></tr> <tr> <td>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td><td>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5%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5% </td></tr> </table> <p>※ 승용,승합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기업체연합으로 실시한 증명서류(기업간 계약, 운영계획 등)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승용차함께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5% 	<p>[별표3]</p> <p>기업체연합 교통 경감기준</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승용차함께타기</td></tr> <tr> <td>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td><td>참여한 기업체</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명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td></tr> <tr> <td colspan="2">□ 통근버스 공동운영</td></tr> <tr> <td>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td><td>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 5%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 5% </td></tr> </table> <p>※ 승용,승합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기업체연합으로 실시한 증명서류(기업간 계약, 운영계획 등)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승용차함께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명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 5%
□ 승용차함께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5% 																								
□ 승용차함께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명 이상 승용차함께 타기 이행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 5% 																								

현행				개정안																																																																																																																																																																																																																																		
<div>[별지 제3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가. 시설물 개요</div> <table><tr><td>시설물명</td><td></td><td>건축연면적 (사용면적)</td><td>m² (m²)</td></tr><tr><td>소재지</td><td>고양시 구</td><td>소유자 (대표자)</td><td></td></tr><tr><td>주차장 규모</td><td>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td><td>중사자수</td><td>명</td></tr></table> <div>나.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 종류(해당란에 경감비율 기재)</div> <table><tr><td colspan="2">프로그램명</td><td>경감비율 (%)</td><td>이행예정 프로그램</td><td>비고</td></tr><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r><tr><td colspan="2">통근버스운영</td><td>1 ~ 30</td><td></td><td></td></tr><tr><td rowspan="4">승용차부제 운영</td><td>2부제</td><td>30</td><td></td><td></td></tr><tr><td>5부제</td><td>20</td><td></td><td></td></tr><tr><td>10부제</td><td>10</td><td></td><td></td></tr><tr><td>승용차 요일제</td><td>20</td><td></td><td></td></tr><tr><td colspan="2">출근시차제</td><td>5 ~</td><td></td><td></td></tr><tr><td colspan="2">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td><td>10</td><td></td><td></td></tr><tr><td colspan="2">승용차함께타기</td><td>3 ~ 20</td><td></td><td></td></tr><tr><td rowspan="2">주차장유료화</td><td>전면</td><td>20</td><td></td><td></td></tr><tr><td>부분</td><td>10</td><td></td><td></td></tr><tr><td colspan="2">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td><td>5</td><td></td><td></td></tr><tr><td rowspan="2">자전거 이용</td><td>5%이상</td><td>5</td><td></td><td></td></tr><tr><td>10%이상</td><td>10</td><td></td><td></td></tr><tr><td colspan="2">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기타</td><td></td><td></td><td></td></tr></table> <div>다. 교통량감축이행기간 ○ 기간 : . . .부터까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div>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중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	이행예정 프로그램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1 ~ 3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 요일제	20			출근시차제		5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3 ~ 20			주차장유료화	전면	20			부분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5%이상	5			10%이상	10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기타					<div>[별지 제3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가. 시설물 개요</div> <table><tr><td>시설물명</td><td></td><td>건축연면적 (사용면적)</td><td>m² (m²)</td></tr><tr><td>소재지</td><td>고양시 구</td><td>소유자 (대표자)</td><td></td></tr><tr><td>주차장 규모</td><td>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td><td>중사자수</td><td>명</td></tr></table> <div>나.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 종류(해당란에 경감비율 기재)</div> <table><tr><td colspan="2">프로그램명</td><td>경감 비율(%)</td><td>이행예정 프로그램</td><td>비고</td></tr><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r><tr><td rowspan="2">통근버스운영</td><td>출근지 또는 퇴근지만 운영</td><td>10</td><td></td><td></td></tr><tr><td>출·퇴근시 모두 운영</td><td>20</td><td></td><td></td></tr><tr><td rowspan="4">승용차부제 운영</td><td>2부제</td><td>30</td><td></td><td></td></tr><tr><td>5부제</td><td>20</td><td></td><td></td></tr><tr><td>10부제</td><td>10</td><td></td><td></td></tr><tr><td>승용차요일제</td><td>20</td><td></td><td></td></tr><tr><td colspan="2">시차출근제</td><td>5</td><td></td><td></td></tr><tr><td colspan="2">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td><td>10</td><td></td><td></td></tr><tr><td rowspan="2">승용차 함께타기</td><td>10%이상20%미만참여</td><td>5</td><td></td><td></td></tr><tr><td>20%이상 참여</td><td>10</td><td></td><td></td></tr><tr><td rowspan="3">주차장 유료화</td><td>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 설물이8급액에 따라 무 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 차권을 배부하는 경우</td><td>5</td><td></td><td></td></tr><tr><td>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td><td>10</td><td></td><td></td></tr><tr><td>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td><td>20</td><td></td><td></td></tr><tr><td colspan="2">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td><td>5</td><td></td><td></td></tr><tr><td colspan="2">자전거 이용</td><td>10%이상</td><td>10</td><td></td></tr><tr><td rowspan="2">대중교통이용의 날 운</td><td>월 1회 이상 3회 이하</td><td>2</td><td></td><td></td></tr><tr><td>월 4회 이상</td><td>5</td><td></td><td></td></tr><tr><td rowspan="2">경차주차구획 운영</td><td>5%이상 10%미만</td><td>5</td><td></td><td></td></tr><tr><td>10% 이상</td><td>10</td><td></td><td></td></tr><tr><td colspan="2">의무휴업일</td><td>이틀</td><td>5</td><td></td></tr><tr><td rowspan="3">자율휴무</td><td>2일 시행시</td><td>5</td><td></td><td></td></tr><tr><td>3일 시행시</td><td>7</td><td></td><td></td></tr><tr><td>4일이상 시행</td><td>10</td><td></td><td></td></tr><tr><td colspan="2">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td><td></td><td></td><td></td></tr></table> <div>다. 교통량감축이행기간 ○ 기간 : . . .부터까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div>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중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 비율(%)	이행예정 프로그램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지 또는 퇴근지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차출근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 함께타기	10%이상20%미만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 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 설물이8급액에 따라 무 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 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 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중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	이행예정 프로그램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1 ~ 3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 요일제	20																																																																																																																																																																																																																																				
출근시차제		5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3 ~ 20																																																																																																																																																																																																																																				
주차장유료화	전면	20																																																																																																																																																																																																																																				
	부분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5%이상	5																																																																																																																																																																																																																																				
	10%이상	10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기타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중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 비율(%)	이행예정 프로그램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지 또는 퇴근지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차출근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 함께타기	10%이상20%미만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 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 설물이8급액에 따라 무 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 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 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현행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나. 경감신청내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	당초 신청	경감 신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1 ~ 3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 요일제	20		
출근시차제	5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3 ~ 20			
주차장 유료화	전면	20		
	부분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5%이상	5		
	10%이상	10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기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나. 경감을 결정사항

프로그램명	경감 비율(%)	당초 신청	경감 신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간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차출근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 함께타기	10%이상 20%미만 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 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 설물이용금액에 따라 무 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 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 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년 월 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이행실
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
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관인)
○○○ 귀하

현행				개정안																																																																																																																																																																																																																																																																												
<div>[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div> <table><tr><td>시설물명</td><td></td><td>건축연면적 (사용면적)</td><td>m² (m²)</td></tr><tr><td>소재지</td><td>고양시 구</td><td>소유자 (대표자)</td><td></td></tr><tr><td>주차장 규모</td><td>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td><td>종사자수</td><td>명</td></tr></table> <div>나. 경감률 결정사항</div> <table><tr><th colspan="2">프로그램명</th><th>경감비율 (%)</th><th>신청 사항</th><th>결정 사항</th><th>비고</th></tr><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2">통근버스운영</td><td>1 ~ 30</td><td></td><td></td><td></td></tr><tr><td rowspan="4">승용차부제 운영</td><td>2부제</td><td>30</td><td></td><td></td><td></td></tr><tr><td>5부제</td><td>20</td><td></td><td></td><td></td></tr><tr><td>10부제</td><td>10</td><td></td><td></td><td></td></tr><tr><td>승용차 요일제</td><td>2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출근시차제</td><td>5 ~</td><td></td><td></td><td></td></tr><tr><td colspan="2">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승용차함께타기</td><td>3 ~ 20</td><td></td><td></td><td></td></tr><tr><td rowspan="2">주차장유료화</td><td>전면</td><td>20</td><td></td><td></td><td></td></tr><tr><td>부분</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td><td>5</td><td></td><td></td><td></td></tr><tr><td rowspan="2">자전거 이용</td><td>5%이상</td><td>5</td><td></td><td></td><td></td></tr><tr><td>10%이상</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기타</td><td></td><td></td><td></td><td></td></tr></table> <div>「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div> <div>년 월 일 ○○ 구청장 (관인)</div>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	신청 사항	결정 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1 ~ 3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 요일제	20				출근시차제		5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3 ~ 20				주차장유료화	전면	20				부분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5%이상	5				10%이상	10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기타						<div>[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가. 시설물 개요</div> <table><tr><td>시설물명</td><td></td><td>건축연면적 (사용면적)</td><td>m² (m²)</td></tr><tr><td>소재지</td><td>고양시 구</td><td>소유자 (대표자)</td><td></td></tr><tr><td>주차장 규모</td><td>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td><td>종사자수</td><td>명</td></tr></table> <div>나. 경감신청내역</div> <table><tr><th colspan="2">프로그램명</th><th>경감 비율(%)</th><th>당초 신청</th><th>경감 신청</th><th>비고</th></tr><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2">통근버스운영</td><td>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td><td>10</td><td></td><td></td><td></td></tr><tr><td>출·퇴근시 모두 운영</td><td>20</td><td></td><td></td><td></td></tr><tr><td rowspan="4">승용차부제 운영</td><td>2부제</td><td>30</td><td></td><td></td><td></td></tr><tr><td>5부제</td><td>20</td><td></td><td></td><td></td></tr><tr><td>10부제</td><td>10</td><td></td><td></td><td></td></tr><tr><td>승용차요일제</td><td>2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시차출근제</td><td>5</td><td></td><td></td><td></td></tr><tr><td colspan="2">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td><td>10</td><td></td><td></td><td></td></tr><tr><td rowspan="2">승용차 함께타기</td><td>10%이상 20%미만 참여</td><td>5</td><td></td><td></td><td></td></tr><tr><td>20%이상 참여</td><td>10</td><td></td><td></td><td></td></tr><tr><td rowspan="4">주차장 유료화</td><td>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td><td>5</td><td></td><td></td><td></td></tr><tr><td>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td><td>10</td><td></td><td></td><td></td></tr><tr><td>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td><td>20</td><td></td><td></td><td></td></tr><tr><td>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td><td>5</td><td></td><td></td><td></td></tr><tr><td>자전거 이용</td><td>10%이상</td><td>10</td><td></td><td></td><td></td></tr><tr><td rowspan="2">대중교통이용의 날 영</td><td>월 1회 이상 3회 이하</td><td>2</td><td></td><td></td><td></td></tr><tr><td>월 4회 이상</td><td>5</td><td></td><td></td><td></td></tr><tr><td rowspan="2">경차주차구획 운영</td><td>5%이상 10%미만</td><td>5</td><td></td><td></td><td></td></tr><tr><td>10% 이상</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의무휴업일</td><td>이틀</td><td>5</td><td></td><td></td></tr><tr><td rowspan="3">자율휴무</td><td>2일 시행시</td><td>5</td><td></td><td></td><td></td></tr><tr><td>3일 시행시</td><td>7</td><td></td><td></td><td></td></tr><tr><td>4일이상 시행</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td><td></td><td></td><td></td><td></td></tr></table> <div>「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div> <div>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div>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 비율(%)	당초 신청	경감 신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차출근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 함께타기	10%이상 20%미만 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 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 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	신청 사항	결정 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1 ~ 3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 요일제	20																																																																																																																																																																																																																																																																														
출근시차제		5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3 ~ 20																																																																																																																																																																																																																																																																														
주차장유료화	전면	20																																																																																																																																																																																																																																																																														
	부분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5%이상	5																																																																																																																																																																																																																																																																														
	10%이상	10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기타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 비율(%)	당초 신청	경감 신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차출근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 함께타기	10%이상 20%미만 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 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 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현행				개정안																																																																																																																																																																																																																																																																									
<div>[별지 제6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div> <table><tr><td>시설물명</td><td></td><td>건축연면적 (사용면적)</td><td>m² (m²)</td></tr><tr><td>소재지</td><td>고양시 구</td><td>소유자 (대표자)</td><td></td></tr><tr><td>주차장 규모</td><td>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td><td>종사자수</td><td>명</td></tr></table> <div>나. 경감율 결정사항</div> <table><tr><th colspan="2">프로그램명</th><th>경감비율 (%)</th><th>신청 사항</th><th>결정 사항</th><th>비고</th></tr><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2">통근버스운영</td><td>1 ~ 30</td><td></td><td></td><td></td></tr><tr><td rowspan="4">승용차부제 운영</td><td>2부제</td><td>30</td><td></td><td></td><td></td></tr><tr><td>5부제</td><td>20</td><td></td><td></td><td></td></tr><tr><td>10부제</td><td>10</td><td></td><td></td><td></td></tr><tr><td>승용차 요일제</td><td>2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출근시차제</td><td>5 ~</td><td></td><td></td><td></td></tr><tr><td colspan="2">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승용차함께타기</td><td>3 ~ 20</td><td></td><td></td><td></td></tr><tr><td rowspan="2">주차장유료화</td><td>전면</td><td>20</td><td></td><td></td><td></td></tr><tr><td>부분</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td><td>5</td><td></td><td></td><td></td></tr><tr><td rowspan="2">자전거 이용</td><td>5%이상</td><td>5</td><td></td><td></td><td></td></tr><tr><td>10%이상</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기타</td><td></td><td></td><td></td><td></td></tr></table> <div>년 월 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div> <div>년 월 일 ○○ 구청장 (관인)</div> <div>○○○ 귀하</div>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	신청 사항	결정 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1 ~ 3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 요일제	20				출근시차제		5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3 ~ 20				주차장유료화	전면	20				부분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5%이상	5				10%이상	10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기타						<div>[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div> <table><tr><td>시설물명</td><td></td><td>건축연면적 (사용면적)</td><td>m² (m²)</td></tr><tr><td>소재지</td><td>고양시 구</td><td>소유자 (대표자)</td><td></td></tr><tr><td>주차장 규모</td><td>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td><td>종사자수</td><td>명</td></tr></table> <div>나. 경감률 결정사항</div> <table><tr><th colspan="2">프로그램명</th><th>경감 비율(%)</th><th>신청 사항</th><th>결정 사항</th><th>비고</th></tr><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2">통근버스운영</td><td>출근시 또는 퇴근시간 운영</td><td>10</td><td></td><td></td><td></td></tr><tr><td>출·퇴근시 모두 운영</td><td>20</td><td></td><td></td><td></td></tr><tr><td rowspan="4">승용차부제 운영</td><td>2부제</td><td>30</td><td></td><td></td><td></td></tr><tr><td>5부제</td><td>20</td><td></td><td></td><td></td></tr><tr><td>10부제</td><td>10</td><td></td><td></td><td></td></tr><tr><td>승용차요일제</td><td>2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시차출근제</td><td>5</td><td></td><td></td><td></td></tr><tr><td colspan="2">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td><td>10</td><td></td><td></td><td></td></tr><tr><td rowspan="2">승용차 함께타기</td><td>10%이상 20%미만 참여</td><td>5</td><td></td><td></td><td></td></tr><tr><td>20%이상 참여</td><td>10</td><td></td><td></td><td></td></tr><tr><td rowspan="4">주차장 유료화</td><td>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td><td>5</td><td></td><td></td><td></td></tr><tr><td>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td><td>10</td><td></td><td></td><td></td></tr><tr><td>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td><td>20</td><td></td><td></td><td></td></tr><tr><td>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td><td>5</td><td></td><td></td><td></td></tr><tr><td>자전거 이용</td><td>10%이상</td><td>10</td><td></td><td></td><td></td></tr><tr><td rowspan="2">대중교통이용의 날 영</td><td>월 1회 이상 3회 이하</td><td>2</td><td></td><td></td><td></td></tr><tr><td>월 4회 이상</td><td>5</td><td></td><td></td><td></td></tr><tr><td rowspan="2">경차주차구획 운영</td><td>5%이상 10%미만</td><td>5</td><td></td><td></td><td></td></tr><tr><td>10% 이상</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의무휴업일</td><td>이틀</td><td></td><td></td><td></td></tr><tr><td rowspan="3">자율휴무</td><td>2일 시행시</td><td>5</td><td></td><td></td><td></td></tr><tr><td>3일 시행시</td><td>7</td><td></td><td></td><td></td></tr><tr><td>4일이상 시행</td><td>10</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td><td></td><td></td><td></td><td></td></tr></table> <div>「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div> <div>년 월 일 ○○ 구청장 (관인)</div>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 비율(%)	신청 사항	결정 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간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차출근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 함께타기	10%이상 20%미만 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 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 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	신청 사항	결정 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1 ~ 3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 요일제	20																																																																																																																																																																																																																																																																											
출근시차제		5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함께타기		3 ~ 20																																																																																																																																																																																																																																																																											
주차장유료화	전면	20																																																																																																																																																																																																																																																																											
	부분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5%이상	5																																																																																																																																																																																																																																																																											
	10%이상	10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기타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고양시 구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프로그램명		경감 비율(%)	신청 사항	결정 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간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 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차출근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승용차 함께타기	10%이상 20%미만 참여	5																																																																																																																																																																																																																																																																											
	20%이상 참여	10																																																																																																																																																																																																																																																																											
주차장 유료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시설물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5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만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자전거 이용	10%이상	10																																																																																																																																																																																																																																																																											
대중교통이용의 날 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경차주차구획 운영	5%이상 10%미만	5																																																																																																																																																																																																																																																																											
	10%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도시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

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4.5.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3.8.6., 2014.5.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2008.3.28.>]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에서 이동 <2008.3.28.>]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4.1.14.>

② 삭제 <2014.1.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7.14.>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의2(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2.12.28., 2014.1.14., 2014.7.7., 2014.7.14., 2014.8.6.>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 5의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4.1.14., 2014.8.6.>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법 제36조제8항 및 이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4.8.6.>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4.1.14.]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6.10.>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 대상 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8.6.>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5조의2(조정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6.10.]

제26조(분할 납부)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1.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의 기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4.8.6.>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8.12.31.]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8.5.] [시행일 : 2014.8.7.] 제3조의2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5.] [시행일 : 2014.8.7.] 제3조의3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 삭제 <2014.8.5.>

제9조(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령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5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 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 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마. 주차정보제공 시스 템 구축·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0
			주차정보 제공	5
2. 대중교통 이 용촉진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2
			월 4회 이상 운영	5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 통카드 등 지급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20
	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3. 승용차 수요 관리	가.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10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 제 또는 5부제			20
	다. 2부제			30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마.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10
			40퍼센트 이상 참여	15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참여	10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	5
			80퍼센트 이상 참여	10
6. 자전거 이용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10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	20
			30퍼센트 이상 참여	30
7.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20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5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9. 경차 주차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시설물 소유자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times (1-b) \times (1-c)] \times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가.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

$$\text{감축 비율} = [1 - (\text{해당 연도 주차면수} / \text{기준 연도 주차면수})] \times 100(\%)$$

나.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text{감축 비율} = [1 - (\text{해당 연도 주차면수} / \text{기준 주차면수})] \times 100(\%)$$

- ※ 1)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 2) "기준 연도 주차면수"란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 3) "기준 주차면수"란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

【시행규칙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 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시행규칙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 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 골프장	1.80	1.46	1.32	1.06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_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1.16	1.00	0.78
		나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0	0.82	0.74	0.74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12	1.04	0.96	0.96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5.46	4.48	2.67	2.67
		다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나	특수목욕탕	1.44	1.16	1.02	1.02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2.38	1.94	1.12

		나	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3.43	2.39	1.49
		다	관람장: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2.38	1.94	1.12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2.42	2.16	2.03
		나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61	0.50	0.37	0.3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나	철도역사	4.13	3.76	3.11	2.46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1.18	1.04	1.04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나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2.68	2.14	1.71
17	기타			1.20	1.00	0.82	0.71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고양시 고시 제2014 - 303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YMCA일산청소년수련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일산동구 풍동 616-7번지 일원에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YMCA일산청소년수련원)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 작성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16-7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청소년수련시설
 - 명칭 : 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서울YMCA 일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수련시설	일산동구 풍동 616-7 번지 일원	54,164	고양시 고시 제2008-59호 (‘08.06.03’)	자연 녹지지역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 성명 : 재단법인 서울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대표자 조기홍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1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번 호	행정구역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지 번				성 명	주 소
1	일산동구 풍동	616-1	체	22,490	4,857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2		616-7	체	62,235	42,480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3		616-10	원	6,744	6,744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4		621-8	구	281	83	건설교통부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2. 관계도서 : “계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고양시 고시 제2014-304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 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에 환지방식으로 추진중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4. 10. 17.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
- 명칭 :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54,16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재생략”

2) 관계도서 : “계재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계					78,901.0	54,165.0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3	전	1,052.0	15.0	고양시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	전	163.0	159.0	고양시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5	전	456.0	456.0	고양시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	전	173.0	171.0	고양시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1	천	11.0	11.0	경기도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	천	17.0	7.0	경기도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	천	1,737.0	1.0	경기도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천	88.0	88.0	이철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83 백현마을휴먼시아 2801-204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2	천	103.0	102.0	경기도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3	천	125.0	125.0	이대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2	46/213				
								김은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42-1 현재트윈빌 101-702	167/213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4	천	2.0	1.0	경기도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5	천	11.0	2.0	경기도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1	대	473.0	1.0	이대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2	25/473				
								김은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42-1 현재트윈빌 101-702	448/473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전	147.0	67.0	고양시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	천	121.0	3.0	고양시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8-38	도	14.0	14.0	고양시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10	천	65.0	5.0	국(건설부)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17	천	73.0	62.0	국(건설부)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18	천	61.0	61.0	국(건설부)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19	천	19.0	17.0	국(건설부)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천	673.0	668.0	국(건설부)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1	천	103.0	103.0	국(건설부)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6	천	115.0	41.0	국(건설부)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7	천	35.0	26.0	국(건설부)						
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8	천	15.0	15.0	국(국토교통부)						
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	도	326.0	272.0	국(건설부)						
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도	927.0	495.0	국(국토교통부)						
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2	도	15.0	15.0	국(국토교통부)						
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3	도	5.0	2.0	국(건설부)						
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6-8	대	114.0	4.0	국(기획재정부)						
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6-10	대	116.0	3.0	국(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5	도	253.0	253.0	국(국토교통부)						
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6	도	178.0	178.0	차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7 숲속마을 508-404	1/2				
								이은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5-10	1/2	근저당권	차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7 숲속마을 508-404	
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대	919.0	919.0	차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7 숲속마을 508-404	1/2				
								이은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5-10	1/2	근저당권	차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7 숲속마을 508-404	
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8	도	228.0	228.0	국(국토교통부)						
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9	대	45.0	45.0	고양시						
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대	269.0	269.0	윤봉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23-2(고양동)		근저당권	벽제농업협 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전	837.0	802.0	이기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에이동 2601호(서초동, 현대슈퍼빌)	1/2	근저당권 , 지상권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문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235번길 5(대자동)	1/2				
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4	도	245.0	199.0	국(국토교통부)						
4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03	구	456.0	19.0	국(건설부)						
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0	구	365.0	365.0	고양시						
4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2	대	406.0	406.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원당신용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4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3	전	364.0	364.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 지상권	원당신용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4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3-1	전	573.0	573.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 지상권	원당신용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4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4	구	551.0	551.00	국(건설부)						
4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5	구	33.0	33.0	국(건설부)						
4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6	천	935.0	337.0	고양시						
4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7	구	43.0	43.0	국(건설부)						
4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8	천	132.0	132.0	고양시						
5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	전	167.0	167.0	국(국방부)						
5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6	도	251.0	203.0	국(국방부)						
5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7	전	854.0	854.0	국(국방부)						
5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8	전	38.0	38.0	국(국방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5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9	천	133.0	133.0	국(국방부)						
5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0	전	212.0	212.0	국(국방부)						
5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1	도	89.0	89.0	국(국토교통부)						
5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대	496.0	496.0	전영철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266					
5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전	518.0	518.0	홍성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7길 22(연희동)					
5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4	전	31.0	31.0	국(국토교통부)						
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5	대	76.0	76.0	국(국토교통부)						
6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6	천	496.0	62.0	고양시						
6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7	도	13.0	13.0	국(국토교통부)						
6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8	천	187.0	187.0	전진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번지	1/2				
								곽명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2 한솔마을 505-1503	1/8				
								곽형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97-8 이연파레스 301	1/8				
								곽은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4 중산마을 801-705	1/8				
								곽형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 로얄팰리스 에아-703	1/8				
6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9	도	73.0	73.0	국(국토교통부)						
6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0	전	678.0	678.0	박노경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4-1701					
6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1	전	1,903.0	1,903.0	전영철	고양군 벽제읍 벽제동 266-4					
6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2	전	6.0	6.0	국(국토교통부)						
6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3	도	15.0	15.0	한상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55 백마마을 107-403					
6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4	전	34.0	34.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 지상권	원당신용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7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7	전	682.0	679.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 지상권	원당신용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7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9	도	259.0	128.0	노태구	서울 은평구 진관동 81 은평뉴타운 우물골 251-1102					
7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전	250.0	183.0	김교선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205-5		근저당권 , 지상권	파주축산업 협동조합	파주시 금촌동 56-2(봉일천지점)	
7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7	전	427.0	318.0	박성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4-36					
7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답	820.0	670.0	김종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22-1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7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대	889.0	889.0	문성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66, 102동 410호(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		근저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위카힐지점)	
7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9	도	185.0	70.0	경기도						
7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전	382.0	382.0	고양시						
7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답	383.0	383.0	임정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1길 25-3,402호(잠원동)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외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마두역지점)	
7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전	273.0	273.0	고양시						
8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답	200.0	200.0	고양시						
8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3	답	172.0	172.0	김진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3, 105동 403호(봉천동, 벚산블루밍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가양중앙지점)	
8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전	654.0	654.0	최태용	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 극동아파트 2동 1402호					
8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0	주	932.0	932.0	이창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12(원흥동)		근저당권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일산마두지점)	
8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답	1,122.0	1,122.0	박선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141-43					
8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2	천	40.0	40.0	동약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8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	전	345.0	345.0	이창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12(원흥동)		근저당권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일산마두지점)	
8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6	답	76.0	76.0	봉종필	고양시 벽제동 99					
8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8	대	15.0	15.0	봉종필	고양시 벽제동 99					
8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대	1,256.0	1,256.0	봉종필	고양시 벽제동 99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고양시지부)	
9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3	전	380.0	380.0	봉종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845번길 90(벽제동)					
9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5	대	4.0	4.0	고양시						
9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6	대	31.0	31.0	고양시						
9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구	5,364.0	388.0	국(건설부)						
9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대	989.0	989.0	하군자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44-2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원당지점)	
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9	전	450.0	450.0	전주범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 81					
9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1	전	456.0	456.0	하군자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44-2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원당지점)	
9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4	천	146.0	146.0	조옥경	경성부 교북정 14번지					
9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6	천	185.0	185.0	전창환	고양군 고양면 벽제리 100					
9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8	전	886.0	886.0	전창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10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	615.0	615.0	전창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10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1	전	977.0	977.0	이춘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96					
10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5	답	1,551.0	1,551.0	우상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헤움로162-21(고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10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주	973.0	973.0	김태영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6-903					
10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9	답	2,878.0	2,878.0	김혜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20 푸른마을 201-2003		근저당권 ,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10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0	전	76.0	76.0	김태영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6-903					
10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전	1,507.0	1,507.0	김태영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6-903					
10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4	전	286.0	226.0	김태영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6-903					
10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9	도	50.0	50.0	국(국방부)						
10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41-1	임	18.0	18.0	고양시						
1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67	임	2.0	2.0	동약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1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68	도	44.0	44.0	국(국토교통부)						
1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69	답	42.0	42.0	동약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1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1	종	2,450.0	2,450.0	재단법인 천주교의 정부교구 유지재단	의정부시 의정부동 429-6					
1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답	255.0	245.0	윤희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33-12					
1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87	답	455.0	455.0	이준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96					
1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91	전	14.0	12.0	고양시						
1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92	답	322.0	322.0	이준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96					
1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98	전	458.0	458.0	동약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1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	전	305.0	305.0	윤순철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20 푸른마을 201-1903		근저당권 ,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1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전	1,666.0	1,666.0	이금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7-9	3/7				
								이근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7-9	2/7				
								이소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7-9	2/7				
1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전	1,531.0	1,531.0	윤평중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440번길 173		근저당권 ,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1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4	대	138.0	138.0	윤순철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20 푸른마을 201-1903		근저당권 ,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근저당권	박대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읍내로 25, 107동 904호(고양동, 우방유헤아파트)	
1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임	748.0	748.0	이상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6					
1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	잡	998.0	998.0	박성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4-36					
1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전	667.0	667.0	이상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6					
1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1	전	2,147.0	2,147.0	고현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나길 15,101동 409호(내발산동, 수산오성아파트)		근저당권 , 지상권	강서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강화로 127(방화동)(신월사거리지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면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1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2	전	1,350.0	1,350.0	박성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4-36					
1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28	전	33.0	33.0	이유순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22번길 52, 302동 805호(호원동, 호원3차우성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근저당권	최무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03(가능동)	
1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36	묘	60.0	60.0	고현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나길 15,101동 409호(내발산동, 수산오성아파트)		근저당권	강서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강화로 127(방화동)(신월사거리지점)	
1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39	전	37.0	37.0	심정보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계동 360-2 청구아파트 106-301					
1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45	전	1,092.0	1,092.0	허옥수	경기도 구리시 코스모스길213번길 63-66(도평동)		근저당권,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1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62	전	111.0	111.0	주식회사 미평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127-20					
1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7	잡	891.0	227.0	국(국방부)						
1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잡	246.0	246.0	국(국방부)						
1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9	잡	145.0	145.0	국(국방부)						
1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0	잡	3,952.0	465.0	국(국방부)						
1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천	1,581.0	187.0	국(국방부)						
1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5	전	104.0	24.0	고양시						
1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3-1	도	84.0	84.0	이중배	서울 강남구 서초동 279	6/13				
								김영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8	2/13				
								이중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8	4/13				
								이해숙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196	1/13				
140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33-25	도	90.0	4.0	고양시						
14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33-26	전	143.0	47.0	고양시						
142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33-27	전	393.0	20.0	고양시						
14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42-4	도	965.0	338.0	경기도						
144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43-4	도	36.0	36.0	봉충필	고양시 벽제읍 벽제리 99					
145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60-7	도	1,018.0	641.0	경기도						
146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61-1	도	628.0	316.0	국(국토교통부)						
147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66-15	도	360.0	256.0	경기도						
148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96-1	도	167.0	9.0	고양시						
149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96-10	도	889.0	45.0	국(국토교통부)						
150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65-1	천	7.0	7.0	경기도						
15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76	도	502.0	29.0	국(국토교통부)						
152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79-18	구	2,199.0	11.0	국(건설부)						
15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84	구	1,935.0	26.0	국(건설부)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 가옥, 수목 등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준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5	고양시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	경기도	천막		144.0 m ²	존치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	경기도	심야보일러	온수탱크포함	1 식	존치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	경기도	가차	판넬	17.0 m ²	존치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주택및 근린생활시설	벽돌조	204.0 m ²	철거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근린생활시설	벽돌조	107.0 m ²	철거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주택	블럭조스레트	38.0 m ²	철거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휴업보상	장터식당	1 식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간판		1 식	철거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간판	마이홈	2 식	철거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고양시	컨테이너		14.0 m ²	철거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고양시	헬스		12.5 m	철거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고양시	창고	조립식	11.0 m ²	철거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점포	철재	101.0 m ²	철거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휴업보상	늘푸름	1 식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간판		3 식	철거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화장실	이동식	2 식	철거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화훼하우스		82.0 m ²	철거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천막		21.0 m ²	철거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비닐하우스		9.0 m ²	철거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화장실	이동식	1 식	철거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6-8	기획재정부	주택		114.0 m ²	철거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6-8	기획재정부	창고		54.0 m ²	철거	
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근린생활시설	벽돌조	218.0 m ²	철거	
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창고	판넬조	12.0 m ²	철거	
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창고	판넬조	4.0 m ²	철거	
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천막		11.0 m ²	철거	
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세차장		68.0 m ²	철거	
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세차장	천막	26.0 m ²	철거	
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세차장	천막	9.0 m ²	철거	
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차마	천막	11.0 m ²	철거	
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차마	천막	11.0 m ²	철거	
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담장		22.3 m	철거	
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진공청소기		2 식	철거	
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간판		2 식	철거	
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휴업보상	신도시오토바이	1 식		
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간판		1 식	철거	
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휴업보상	KCC페인트	1 식		
4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간판		2 식	철거	
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천막		1 식	철거	
4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휴업보상	셀프카센타	1 식		
4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간판		1 식	철거	
4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주택	블럭스레트	78.0 m ²	철거	
4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비닐하우스		34.0 m ²	철거	
4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창고		9.0 m ²	철거	
4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창고		6.0 m ²	철거	
4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차마		19.0 m ²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4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물탱크		1	식	철거	
5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담장	판넬	27.5	m	철거	
5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화장실	조립식	5.0	m²	철거	
5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개나리		4	주	철거	
5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목련		1	주	철거	
5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소나무		1	주	철거	
5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잣나무		1	주	철거	
5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대추나무		1	주	철거	
5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근린생활시설	벽돌조	94.0	m²	철거	
5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근린생활시설	블럭조	66.0	m²	철거	
5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근린생활시설	블럭조	18.0	m²	철거	
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화장실	슬라브	24.0	m²	철거	
6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처마		3.0	m²	철거	
6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휴업보상	MJ가구	1	식		
6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간판		3	식	철거	
6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휴업보상	덕천목공예	1	식		
6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간판		1	식	철거	
6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비닐하우스		81.0	m²	철거	
6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휴업보상	남해공업사	1	식		
6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간판		2	식	철거	
6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주택	VH,목재	54.0	m²	철거	
7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비닐하우스		36.0	m²	철거	
7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창고	조립식	19.0	m²	철거	
7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창고	목재	18.0	m²	철거	
7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조립식	113.0	m²	철거	
7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철재,컨테이너	11.0	m²	철거	
7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블록,판넬	10.0	m²	철거	
7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처마		5.0	m²	철거	
7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간판		1	식	철거	
7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관정		1	식	철거	
7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복숭아나무		1	주	철거	
8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느티나무		2	주	철거	
8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단풍나무		3	주	철거	
8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과실수		1	주	철거	
8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이전비 (유보살)	1	식		
8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간판		1	식	철거	
8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42.0	m²	철거	
8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6.0	m²	철거	
8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창고		36.0	m²	철거	
8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이전비 (제주도고보살)	1	식	철거	철거
8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2	대진산업개발주식회사	컨테이너		18.0	m²	철거	철거
9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물탱크	Con'c	42.0	m²	철거	
9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펌프실	Con'c,1층	35.0	m²	철거	
9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벽돌조2층	35.0	m²	철거	
9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펌프실	블럭조	35.0	m²	철거	
9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펌프실	블럭조	24.0	m²	철거	
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창고	블럭조	28.0	m²	철거	
9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창고	블럭조	12.3	m²	철거	
9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담장	블럭조	120.0	m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9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대문	철재	1	식	철거	
9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변압기		1	식	철거	
10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급수시설 (펌프)		1	식	철거	
10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단풍나무		5	주	철거	
10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소나무		1	주	철거	
10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개나리		1	주	철거	
10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무궁화나무		3	주	철거	
10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목련		1	주	철거	
10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철죽		5	주	철거	
10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은행나무		1	주	철거	
10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주택	블록기와.	90.0	m ²	철거	전영철
10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주택	블록기와.	26.0	m ²	철거	
1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창고	조립식	14.0	m ²	철거	
1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다용도실	조립식	4.0	m ²	철거	
1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담장	블록	30.6	m	철거	
1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창고	블럭조	9.0	m ²	철거	
1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창고	스레트	6.0	m ²	철거	
1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대문	철재	1	식	철거	
1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연산홍		91	주	철거	
1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대추나무		3	주	철거	
1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머루나무		2	주	철거	
1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주목		10	주	철거	
1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함박꽃		10	주	철거	
1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할미꽃		5	주	철거	
1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단풍나무		5	주	철거	
1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앵두나무		1	주	철거	
1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소나무		2	주	철거	
1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매화나무		2	주	철거	
1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작약		6	주	철거	
1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매실나무		30	주	철거	
1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소나무		4	주	철거	
1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향나무		4	주	철거	
1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무궁화		1	주	철거	
1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포도나무		1	주	철거	
1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단풍나무		3	주	철거	
1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뽕나무		1	주	철거	
1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1	전영철	비닐하우스		24.0	m ²	철거	
1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김교선	컨테이너		32.0	m ²	철거	
1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김교선	화장실	이동식	1	식	철거	
1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김교선	처마		3.0	m	철거	
1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김교선	간판		2	식	철거	
1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김종화	감나무		9	주	철거	김종화
14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김종화	매실나무		40	주	철거	
1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김종화	대추나무		9	주	철거	
14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김종화	기타수목		3	주	철거	
14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테크		40.0	m ²	철거	마창민
14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벤치		5	개	철거	
14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웬스		14.0	m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14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은행나무		1 주	철거	문성자
14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자두나무		1 주	철거	
14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간판		1 식	철거	
14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고양시	간판		1 식	철거	천주교 고양동
15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임정운	컨테이너		27.0 m²	철거	임정운
15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임정운	화장실		1 식	철거	
15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임정운	웬스		65.0 m	철거	
15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임정운	보도블럭		23.0 m²	철거	
15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3	김진희	컨테이너		18.0 m²	철거	윤순철
15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3	김진희	웬스		4.8 m	철거	
15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사무실	조립식	13.0 m²	철거	정만옥
15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컨테이너	주거용	12.0 m²	철거	
15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계근대	40t	1 식	철거	
15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웬스		70.0 m	철거	
1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출입문	L25M	1 식	철거	
16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관정		1 식	철거	
16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기타물품	이전비	1 식	철거	
16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간판		1 식	철거	최태용
16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은행나무		3 주	철거	
16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비닐하우스		132.0 m²	철거	김윤근
16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창고및화장실	조립식	12.0 m²	철거	
16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사과나무		1 주	철거	
16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앵두나무		6 주	철거	
16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복숭아나무		3 주	철거	
17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담장	블록	103.0 m	철거	원홍주 주소
17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세차장		59.0 m²	이전	
17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기름탱크		10 kl	이전	지하 매설
17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감나무		1 주	철거	
17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단풍나무		1 주	철거	
17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소나무		1 주	철거	
17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웬스	철재	84.0 m	철거	(주)봉 신
17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대문	철재	1 식	철거	
17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컨테이너		18.0 m²	철거	
17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물품	전선	1 식	철거	
18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벚나무		1 주	철거	
18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자두나무		1 주	철거	
18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단풍나무		1 주	철거	
18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쥐똥나무		8 m	철거	
18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향나무		1 주	철거	
18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나무		2 주	철거	
18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국토교통부	컨테이너		22.0 m²	철거	
18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국토교통부	간판		1 식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18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국토교통부	웬스	판넬	6.7 m	철거	
18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슬라브	198.0 m ²	존치	
19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가건물	41.0 m ²	존치	
19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가건물	2.0 m ²	존치	
19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무벽	55.0 m ²	존치	
19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무벽	25.0 m ²	존치	
19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전기탑차		9.0 m ²	존치	
1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간판		1.0 식	존치	
19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비닐하우스		242.0 m ²	철거	전창환
19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주택	조립식	17.0 m ²	철거	
19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가차	데크	21.0 m ²	철거	
19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창고	조립식	13.0 m ²	철거	
20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20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화장실	이동식	1 식	철거	
20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건사	철재	8.0 주	철거	
20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장미		1.0 주	철거	
20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향나무		12.0 주	철거	
20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사철나무		6.0 주	철거	
20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포도나무		2.0 주	철거	
20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주유소	슬라브	114.0 m ²	존치	
20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세차장	가건물	47.0 m ²	존치	
20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캐노피		476.0 m ²	존치	
2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담장		85.0 m	존치	
2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가로등		3.0 주	존치	
2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주유기		8.0 기	존치	
2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간판		1.0 식	존치	
2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계사	목재	12.0 m ²	철거	김태영
2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창고	목재	10.0 m ²	철거	
2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비닐하우스		13.5 m ²	철거	
2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향나무		1 주	철거	
2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느티나무		11 주	철거	
2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주목		2 주	철거	
2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소나무		3 주	철거	
2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오엽송		1 주	철거	
2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회양목		12 주	철거	
2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앵두나무		1 주	철거	
2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단풍나무		1 주	철거	
2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사철나무		5 주	철거	
2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쥐똥나무		10.0 m	철거	
2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담장	Con'c블럭	27.0 m	철거	
2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윤희선	웬스		116.0 m	존치	
2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윤희선	대문	철재	1 식	존치	
2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	윤순철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2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은행나무		1 주	철거	
2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단풍나무		2 주	철거	
2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소나무		4 주	철거	
2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오송		1 주	철거	
2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대추나무		3 주	철거	
2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두릅		220 주	철거	
2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연산홍		20 주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2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이금순외2인	비닐하우스		50.0 m ²	철거	
2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이금순외2인	매실나무		10 주	철거	
24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이금순외2인	소나무		30 주	철거	
2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창고	목재	14.0 m ²	철거	
24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24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컨테이너		27.0 m ²	철거	
24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연산홍		4 주	철거	
24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목련		5 주	철거	
24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오가피		2 주	철거	
24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개나리		5 주	철거	
24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주목		1 주	철거	
24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비닐하우스		127.0 m ²	철거	
25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놀이시설		1 식	철거	
25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느티나무		76 주	철거	이윤제
25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살구나무		131 주	철거	
25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산수유		50 주	철거	
25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오가피		101 주	철거	
25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모과		100 주	철거	
25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	박성래	컨테이너		24.0 m ²	철거	
25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주목		421 주	철거	이윤제
25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단풍나무		12 주	철거	
25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보리수		2 주	철거	
2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느티나무		10 주	철거	
26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오가피		40 주	철거	
26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구기자		10 주	철거	
26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36	고현창	컨테이너		14.0 m ²	철거	
26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7	국방부	컨테이너	주거용	18.0 m ²	철거	
26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국방부	화장실		1 식	철거	
26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국방부	관정		1 식	철거	
26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국방부	밤나무		1 주	철거	
26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국방부	앵두나무		5 주	철거	

- 가로등

번호	소재지	지번	가로등번호	소관청	비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39호선 244		철거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0-7	확인불가		철거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39호선 236		철거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확인불가		철거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확인불가		철거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39호선 242		철거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87	확인불가		철거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87	확인불가		철거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6	39호선 230		철거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	확인불가		철거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5	고양동-202		철거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확인불가		철거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확인불가		철거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확인불가		존치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	확인불가		존치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LP-2 018		존치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LP-2 017		존치

- 맨홀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종 류	수량	비 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우수맨홀	1	존치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우수맨홀	1	존치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0-7	경찰맨홀	1	존치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경찰맨홀	1	존치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기타맨홀	1	존치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통신맨홀	1	존치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도시가스맨홀	1	존치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도시가스맨홀	1	존치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가로등맨홀	1	존치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우수맨홀	1	존치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우수맨홀	1	존치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국방부맨홀	1	존치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기타맨홀	1	존치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경찰맨홀	1	존치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1	우수맨홀	1	존치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통신맨홀	1	존치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오수맨홀	1	존치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오수맨홀	1	존치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통신맨홀	1	존치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경찰맨홀	1	존치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우수맨홀	1	존치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기타맨홀	1	존치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우수맨홀	1	존치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0	우수맨홀	1	존치

- 한전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9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9	9634Q 681 대자간 73 R16 L2	한국전력	이전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9634Q 672 대자간 73 R16 L1	한국전력	이전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9634Q 544 대자간 73 R12 L1	한국전력	이전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9634Q 521 대자간 73 R11	한국전력	이전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	9634Q 421 대자간 73 R10	한국전력	이전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1-1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0-7	9634Q 312 대자간 73 R9	한국전력	이전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9634Q 313 대자간 73 R8	한국전력	이전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9634Q 201 대자간 73 R7	한국전력	이전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9634S 293 대자간 73 R7 H1	한국전력	이전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9634Q 012 대자간 73 R7 L3L1	한국전력	이전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2	9634P 904 대자간 73 R7L3 L3R1	한국전력	이전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2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9	9634 051 대자간 73 R2	한국전력	이전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1	9634S041대자간73R1	한국전력	이전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3	9634R543대자간	한국전력	존치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9634R661대자간TRP76T2	한국전력	존치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9634R622대자간SWP78	한국전력	존치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9634R474대자간85R1	한국전력	존치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9634P 501 대자간 88	한국전력	존치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9634P502대자간	한국전력	이전
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9634303대자간89	한국전력	존치
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확인불가	한국전력	존치
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5	9634P421대자간91R1	한국전력	이전
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9634P423대자간91	한국전력	존치
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9	9634P422대자간91R2	한국전력	이전
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0	확인불가	한국전력	존치

- 통신주

번호	소 제 지	지 번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한국통신	이전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한국통신	이전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한국통신	이전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한국통신	이전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한국통신	이전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한국통신	이전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한국통신	이전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28		한국통신	이전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9		한국통신	이전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9		한국통신	이전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1		한국통신	이전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1		한국통신	이전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7		한국통신	이전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		한국통신	이전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5		한국통신	이전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한국통신	이전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한국통신	이전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한국통신	존치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한국통신	존치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7		한국통신	이전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7		한국통신	이전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6		한국통신	이전

- 기타

번호	소 재 지	지 번	종 류	수량	단위	비 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6	온몸근육풀기	1	EA	존치
			온몸 노젓기	1	EA	존치
			공중걸기	1	EA	존치
			윗몸일으키기	1	EA	존치
			마라톤운동	1	EA	존치
			벤치	2	EA	존치
			집수정	1	EA	존치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표지판	1	EA	철거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	온몸근육풀기	1	EA	존치
			온몸 노젓기	1	EA	존치
			공중걸기	1	EA	존치
			벤치	2	EA	존치
			아카시아	1	주	존치
			아카시아	1	주	존치
			집수정	1	EA	존치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가드레일	37	M	철거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0-7	표지판	1	EA	철거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가드레일	14	M	철거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표지판	1	EA	철거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표지판	1	EA	철거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신호등	1	EA	철거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신호등	1	EA	철거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신호등	1	EA	철거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표지판	1	EA	철거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표지판	1	EA	철거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2	신호등	1	EA	철거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웬스	64	M	존치
			옹벽	40	M	존치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웬스	52	M	존치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3	가로등분배기	2	EA	철거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가드레일	9	M	철거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관정	1	EA	철거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7	물탱크	1	EA	철거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6	구조물	1	EA	철거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8	표지판	1	EA	철거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2	기타수목	2	주	철거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4	집수정	1	EA	존치
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	목재교량	11	M	존치
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가로수	5	주	존치
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	표지판	1	EA	존치
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웬스	54	M	존치
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4	가로수	10	주	존치
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집수정	1	EA	존치
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0	표지판	1	EA	존치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7호선외 2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09-94(2009.4.17.)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시행 중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1-17호선외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대로1-17호선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0-02번지 ~ 장항동 654-18번지
- 대로3-47호선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7-14번지 ~ 장항동 672-04번지
- 대로1-16호선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5-12번지 ~ 장항동 525-1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대로1-17호선, 대로3-47호선, 대로1-16호선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분	도시계획도로명	폭(m)	연장(m)	비고
도시계획도로	대로1-17호선	35~49.5	1,400m	
도시계획도로	대로3-47호선	28~33.5	510m	
도시계획도로	대로1-16호선	35~55.5	1,0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성명 : 고양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5.12.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6.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대로1-17호선) : 변경 (소유권정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장항동	540-2	도	8,074	8,074		고양시				
2	장항동	538-4	도	219	219		고양시				
3	장항동	522-38	도	5,266	5,266		국(농림 수산부)				
4	장항동	525-10	도	40	40		고양시				
5	장항동	525-11	도	18,720	409		고양시				
6	장항동	518-17	도	3,156	3,156		국(농림 수산부)				
7	장항동	524-10	도	2,230	1,261		고양시				
8	장항동	524-30	잡	649	649	일산동구장항동524-24	서길석	강남구 역삼동647-15	한국 타이어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524-30	잡	649	649	고양시					
9	장항동	524-31	대	197	197	일산동구장항동524-24	서길석	강남구 역삼동647-15	한국 타이어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524-31	대	197	197	고양시					
10	장항동	524-29	목	784	784	도봉구청동북한산 아이파크524-2402	조현주	용인시 기흥구 마 북동325-3	농협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524-29	목	784	784	고양시					
11	장항동	524-9	도	63	63		고양시				
12	장항동	538-17	전	411	411	일산구 장항동538	함익진				소유권변 동
	장항동	538-17	전	411	411	고양시					
13	장항동	524-22	도	79	79		고양시				
14	장항동	538-18	전	68	68	일산구 장항동 538	함익진				소유권변 동
	장항동	538-18	전	68	68	고양시					
15	장항동	538-16	창	43	43	일산구 장항동 538	함익진				소유권변 동
	장항동	538-16	창	43	43	고양시					
16	장항동	538-12	대	20	20	일산구 장항동 538	함익진	일산서구 일산동594-28	농협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538-12	대	20	20	고양시					
17	장항동	522-32	구	2,437	2,437		국(농림 수산부)				
18	장항동	522-15	도	2,550	2,550		국(농림 수산부)				
19	장항동	524-27	전	22	22	광주군퇴촌면 정지리380-4	이성진				
20	장항동	523-9	도	86	86		고양시				
21	장항동	523-27	답	622	622	일산동구장항동529-2	이은구	남원시 향교동 223	농협	근저당 지상권	
22	장항동	523-29	전	637	637	일산동구 장항동 529-2	이은구	남원시 향교동 223	농협	근저당 지상권	
23	장항동	523-28	전	352	352	일산동일산3차현대	임성순				소유권변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홍타운 304-1001					동			
	장항동	523-28	전	352	352	고양시								
24	장항동	523-26	구	60	60		국(농림 수산부)							
25	장항동	522-35	전	1,355	1,355	서대문구남가좌동2 37-308	이응전							
26	장항동	533-58	대	2	2	일산동구 장항동 808-4	김희섭	일산서구일산동59 4-28	농협	근저당				
27	장항동	529-28	도	4	4		국(농림 수산부)							
28	장항동	522-36	도	147	147	서대문구 남가좌동 237-308	이응전							
29	장항동	522-31	구	95	95		국(농림 수산부)							
30	장항동	433-97	도	33	33	일산동 93-2	이재현				지분 8310/9204			
						일산동구 장항동441	방경완				지분 894/ 9204			
31	장항동	443-98	대	108	108	일산구 장항동 443-79	이영숙	서울중구남대문로 2가 9-1	국민 은행	근저당				
32	장항동	522-3	도	289	289		국(농림 수산부)							
33	장항동	673-92	대	13	13	충남보령시 산면주야리 527-3	신세균	중구충정로 1가 75	농협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673-92	대	13	13	고양시								
34	장항동	673-88	대	6	6	서울 강남구 신사동644-12	김정애	동대문구 답십리동953-1	현대 모비스	근저당				
35	장항동	673-26	대	311	311	마포구신공덕동신 공덕3차상성레미안 아파트302-1501	박종호	일산동구 마두동 799	신협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673-26	대	311	311	고양시								
36	장항동	673-89	대	65	65	서울 강서구 등촌 동631-15홍익연립1 5-203	이옥로				지분 1/2			
						백석동1282- 10 2층	김양호				지분 1/2			
	장항동	673-89	대	65	65	고양시								지분1/2
						백석동1282- 10 2층	김양호							지분1/2
37	장항동	673-87	도	606	606		고양시							
38	장항동	673	주	798	798	일산동구장항동 673	전재일							
39	장항동	673-1	도	928	928		국(농림 수산부)							
40	장항동	673-19	대	923	923	일산동구 장항동673-19	최정균	서울중구을지로2 가181	외환 은행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673-19	대	923	923	고양시								
41	장항동	673-86	구	3,614	3,614		국(농림 수산부)							
42	장항동	667-19	구	257	257		국(농림 수산부)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43	장항동	671-13	대	28	28	일산동구 장항동671-4	최성열				소유권변 동
	장항동	671-13	대	28	28	고양시					
44	장항동	671-14	대	560	560	일산동구 장항동 671-4	최성열				소유권변 동
	장항동	671-14	대	560	560	고양시					
45	장항동	671-11	대	381	381	고 양 시					
46	장항동	674-5	창	481	481	고 양 시					
47	장항동	674-11	답	177	177	고 양 시					
48	장항동	522-34	대	6	6	서대문구남가좌동2 37-308	이응전				
49	장항동	522-30	구	825	825		국(농림 수산부)				
50	장항동	673-83	구	197	197		국(농림 수산부)				
51	장항동	673-27	도	20	20	마포구신공덕동신 공덕3차상성레이안 아파트302-1501	박종호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9	신협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673-27	도	20	20	고양시					
52	장항동	673-91	대	532	532	강화군하점면 이강리 346-2	이동희	중구 회현동 1가 203	우리 은행	근저당	지분 2/4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2-4 웅지빌라 나동 303호	이정원				지분 1/4
						서울 강서구 등촌동628-15 라인아파트 101동1603호	최점례				지분 1/4
	장항동	673-91	대	532	532	고양시					지분 2/4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2-4 웅지빌라 나동 303호	이정원				지분 1/4
						서울 강서구 등촌동628-15 라인아파트 101동1603호	최점례				지분 1/4
53	장항동	673-25	도	51	51	강화군하 점면이강 리346-2	이동희	중구 회현동 1가 203	우리 은행	근저당	지분 2/4
						서울강서구 염창동242-4 웅지빌라 나동 303호	이정원				지분 1/4
						서울강서구 등촌동 628-15 라인아파트 101동1603호	최점례				지분 1/4
	장항동	673-25	도	51	51	고양시					지분 2/4
						서울강서구 염창동242-4 웅지빌라 나동 303호	이정원				지분 1/4
						서울강서구 등촌동 628-15 라인아파트 101동1603호	최점례				지분 1/4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54	장항동	673-90	대	33	33	강서구등촌동 631-15홍익연 립15-203	이옥로				지분 1/2
						서울강서구 등촌동631-15 홍익연립 15동 203호	김양호				지분 1/2
	장항동	673-90	대	33	33	고양시					지분1/2
						서울강서구 등촌동631-15 홍익연립 15동 203호	김양호				지분1/2
55	장항동	516-43	대	32	32	일산구마두동 산수상가303호	방규선	일산서구 일산동 594-28	농협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516-43	대	32	32	고양시					
56	장항동	516-47	전	36	36	일산구마두동 산수상가303호	방규선				소유권변 동
	장항동	516-47	전	36	36	고양시					
57	장항동	516-44	전	89	89	덕양구성사동 724신원당마을 705-106	방미영				소유권변 동
	장항동	516-44	전	89	89	고양시					
58	장항동	523-25	구	74	74		국(농림 수산부)				
59	장항동	523-24	도	95	95		국(농림 수산부)				
60	장항동	671-12	대	25	25	일산동구 장항동441	최영식				소유권변 동
	장항동	671-12	대	25	25	고양시					
61	장항동	440-101	전	6	6	일산동구 장항동441	최영식				
62	장항동	440-21	전	7	7	일산동구 장항동441	최영식				
63	장항동	516-46	전	20	20	일산동후곡마을111 0-405	방규선				소유권변 동
	장항동	516-46	전	20	20	고양시					
64	장항동	516-45	전	78	78	일산서구대화동대 화마을 601-704	방규철	일산서구 일산동 594-28	농협	근저당 지상권	소유권변 동
	장항동	516-45	전	78	78	고양시					
65	장항동	656-61	전	82	82	마두동강촌마을 203-1402	김규홍	성북구 돈암동 한진아파트 208동803호	김병성	근저당	지분 315/ 1589
						마포구도화동 현대APT 102-1204	신성우				지분 1274/ 1589
	장항동	656-61	전	82	82	일산동구 강송로	이건재				지분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95					794.5/158 9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이종순				지분 794.5/158 9
66	장항동	656-67	답	182	182	일산동구 장항동656-41	김웅	충구을지로 1가 101-1	하나 은행	근저당 지상권	소유권변 동
	장항동	656-47	답	182	182	고양시					
67	장항동	656-66	창	151	151	일산동구 장항동656-41	김웅	충구을지로1가 101-1	하나 은행	근저당 지상권	소유권변 동
	장항동	656-66	창	151	151	고양시					
68	장항동	656-57	전	680	680	용인시수지구 성북동 726 엘지빌리지	최갑순				소유권변 동
	장항동	656-57	전	680	680	고양시					
69	장항동	656-60	답	488	488	강남구 논현동 12-8 302호	전보경	강서구 등촌동 526-3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70	장항동	656-56	도	1,460	1,460		국(농림 수산부)				
71	장항동	440-112	구	87	87	지도면 토당리 345	농촌 공사				
72	장항동	656-52	답	3,314	3,314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46-3	향교 재단				
73	장항동	440-113	구	127	127	지도면 토당리 345	농촌 공사				
74	장항동	440-111	구	182	182	지도면 토당리 345	농촌 공사				
75	장항동	440-46	구	162	162		토지 공사				
76	장항동	506-5	구	161	161		국(농림 수산부)				
77	장항동	447-57	구	509	509	지도면 토당리 345	농촌 공사				
78	장항동	447-58	구	758	758	지도면 토당리 345	농촌 공사				
79	장항동	655-24	구	103	103		국(농림 수산부)				
80	장항동	447-56	구	2,230	2,230	지도면 토당리 345	농촌 공사				
81	장항동	441-3	전	73	73	일산동구 장항동441	최영식				
82	장항동	441-2	전	44	44	일산동구 장항동441	최영식				
83	장항동	441-30	전	535	535	일산동구 장항동441	최영식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84	장항동	441-28	대	216	216	일산동구 장항동441	최영식				
85	장항동	674-6	전	665	665	일산동구 장항동441	최영식				
86	장항동	674-7	창	19	19	성사동 494-5 삼화아파트 B208	방규정				소유권변 동
	장항동	674-7	창	19	19	고양시					
87	장항동	674-10	전	2,295	2,295	성사동494-5 삼화아파트 B208	방규정				소유권변 동
	장항동	674-10	전	2,295	2,295	고양시					
88	장항동	656-51	구	321	321		국(농림 수산부)				
89	장항동	656-62	전	718	718	일산리 산881	전기만				
90	장항동	656-59	전	2,830	2,830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산881	이숙자				지분 507.5/ 3518
						656-15	전혜란				지분 1003.5/ 3518
						군포시산본동 금강APT 915-603	전주란				지분 1003.5/ 3518
						장항동 682-7	전미란				지분 1003.5/ 3518
	장항동	656-59	전	2,830	2,830	고양시					소유권변 동
91	장항동	656-53	답	68	68	일산동구 장항동 393	송지영				
92	장항동	656-49	구	126	126		국(농림 수산부)				
93	장항동	656-47	대	431	431	덕양구 대장동 274	김태일				
94	장항동	656-64	전	877	877	덕양구 화정동 952 별빛마을 805-1802	박정순	일산구 대화동759-4	농협	근저당 지상권	
95	장항동	656-63	답	888	888	서대문구연희동 87-33 경향빌라트302	김대철				지분 570/ 1082
						일산동후곡마을170 2-602	박주순				지분 512/ 1082
96	장항동	656-65	답	459	459	서대문구 홍은동 412-26 지층1	박종수				
97	장항동	655-23	전	1,301	1,301	성남시분당구	유림				소유권변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아탑동 335 장미마을 821-804					동
	장항동	655-23	전	1,301	1,301	고양시					
98	장항동	656-36	대	354	354	서대문구홍은동412 -26 지층1	박종수				
99	장항동	655-22	구	163	163		국(농림 수산부)				
100	장항동	655-20	장	864	864	마두동 950-3	유한덕	일산서구 일산동 594-28	농협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655-20	장	864	864	고양시					
101	장항동	655-26	답	1,289	1,289	마두동 950-3	유한덕				소유권변 동
	장항동	655-26	답	1,289	1,289	고양시					
102	장항동	655-25	장	917	917	마두동 950-3	유한덕	일산서구 일산동 594-28	농협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655-25	장	917	917	고양시					
103	장항동	501-1	구	204	204		국(농림 수산부)				
104	장항동	449-5	구	1,347	1,347	토당리 345	농촌 공사				
105	장항동	505-1	도	50	50		국(국토 해양부)				
106	장항동	1351-1	도	40	40		국(농림 수산부)				
107	장항동	908-3	구	1,761	1,761	지도면 토당리 345	농촌 공사				
108	장항동	655-13	도	124	124	마두동 950-3	유한덕	일산서구 일산동 594-28	농협	근저당	소유권변 동
	장항동	655-13	도	124	124	고양시					
109	장항동	655-21	구	234	234		국(농림 수산부)				
110	장항동	652-27	도	163	163		국(농림 수산부)				
111	장항동	656-50	구	113	113		국(농림 수산부)				
112	장항동	523-30	전	424	424	일산동 일산 3차 현대홈타운 304-1001	임성순				지분 500/ 2001
						덕양구토당동 농곡풍림 아파트 102-1001	한창수				지분 1001/ 2001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덕양구 토당동362-20	박판수				지분 500/ 2001
	장항동	523-30	전	424	424	고양시					소유권변 동
113	장항동	655-17	전	2,039	2,039	일산동구 마두강촌 마을 809-1303	유재영				소유권변 동
	장항동	655-17	전	2,039	2,039	고양시					
114	장항동	656-16	창	372	372	강남구 논현동 12-8,302호	전보경	강서구 등촌동 656-36	새마을금고	근저당 지상권	
115	장항동	522-8	도	19	19		국(농림수산 부)				
계				93,111	73,831						
				93,111	73,8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대로3-47호선) : 변경없음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장항동	657-162	제	88	88		국(국토 해양부)				
2	장항동	657-161	구	70	70		국(농림 수산부)				
3	장항동	662-36	답	388	388	고 양 시					
4	장항동	657-160	구	74	74		국(농림 수산부)				
5	장항동	665	답	236	236		국(제정 경제부)				
6	장항동	673-80	구	579	579		국(농림 수산부)				
7	장항동	664-9	답	153	153		국(제정 경제부)				
8	장항동	664-25	답	12	12	경 기 도					
9	장항동	664-37	답	1,576	1,576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10	장항동	664-36	목	561	561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11	장항동	664-41	답	61	61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12	장항동	664-40	답	14	14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13	장항동	664-38	구	122	122	국(농림 수산부)					
14	장항동	664-39	도	188	188	국(농림 수산부)					
15	장항동	667-18	목	2,294	2,294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16	장항동	667-7	도	86	86		고양시				
17	장항동	667-17	전	163	163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18	장항동	669-15	구	270	270		국(농림수산 부)				
19	장항동	669-12	전	770	770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21	장항동	664-23	구	9	9	지도면 토당리 345	농촌 공사				
22	장항동	652-28	도	3,860	3,860		국(농림 수산부)				
23	장항동	669-5	도	1,706	1,706		국(농림 수산부)				
24	장항동	669-4	구	289	289		고양시				
25	장항동	652-26	도	39	39		국(농림 수산부)				
26	장항동	667-20	답	4	4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27	장항동	669-19	창	177	177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28	장항동	669-13	도	81	81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29	장항동	669-14	전	8	8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30	장항동	669-18	전	1,213	1,213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31	장항동	669-17	전	56	56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32	장항동	669-16	구	85	85		국(농림 수산부)				
33	장항동	672-5	도	98	98		국(농림 수산부)				
34	장항동	672-6	답	1,840	1,840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35	장항동	672-2	도	8	8		고양시				
36	장항동	672-4	목	1,294	1,294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37	장항동	673-93	구	49	49		국(국토 해양부)				
38	장항동	662-37	답	146	146	고 양 시					소유권 변동
계				18,684	18,684						
				18,684	18,684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대로1-16호선) : 변경없음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관리 관계	
1	장항동	535-32	도	71	71		국(농림 수산부)				
2	장항동	541-9	도	1,575	1,575		토지 공사				
3	장항동	541-8	도	354	354		토지 공사				
4	장항동	541-11	도	16,976	16,976		농촌 공사				
5	장항동	539-22	답	9	9	일산동구 장항동673-16	이경신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94-28	농협	근저당	
6	장항동	534-26	구	6	6		국(농림 수산부)				
7	장항동	538-15	전	160	160	일산구 장항동 531-16	김복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594-28	농협	근저당	
8	장항동	538-14	전	247	247	일산동구 장항동438	김기년				
9	장항동	538-13	전	275	275	일산동구 장항동538	함익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594-28	농협	근저당	
10	장항동	525-35	답	150	150	양천구신정동327목 동신가지 아파트1311-1403	정동희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19-1	국민 은행	근저당 지상권	
11	장항동	540-13	대	42	42	장흥군대덕읍 신리 866	신종완	서울 중구 을지로 2가181	외환 은행	근저당	
12	장항동	540-14	대	71	71	서대문구홍제동 457남양아파트 101-701	변면식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외환 은행	근저당	
13	장항동	540-11	대	50	50	일산동구 장항동540	이용준	고양시덕양구 성사동 696-4	축협	근저당	
14	장항동	540-12	대	15	15	일산동구 장항동 540	이용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6-4	축협	근저당	
15	장항동	522-39	구	126	126		국(농림 수산부)				
16	장항동	522-37	도	500	500		국(농림 수산부)				
17	장항동	525-39	구	3	3		국(농림수산 부)				
18	장항동	525-38	구	6	6		국(농림 수산부)				
19	장항동	524-26	전	48	48	일산동구 장항동 525	김춘기				
20	장항동	522-29	구	114	114		국(농림수산 부)				
21	장항동	518-16	전	51	51	일산동구 장항동 84	김지문				
22	장항동	518-7	도	9,435	8,709		고양시				
23	장항동	525-34	전	137	137	일산동구 장항동 438	김명선				
24	장항동	525-33	전	137	137	일산동구 장항동438	김경순				
25	장항동	525-32	전	230	230	일산서구주엽동 문촌마을 1803-1402	김지환				
26	장항동	522-33	구	48	48		국(농림 수산부)				
27	장항동	519-14	전	27	27	덕양구화정동 별빛마을924-802	김동화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농협	근저당 지상권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관리 관계	
28	장항동	525-36	답	12	12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가지아파트 1311-1403	정동희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 은행	근저당, 지상권	
29	장항동	540-15	대	72	72	일산동구 장항동 540-7	반석 사업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 기업 은행	근저당	
30	장항동	525-37	잡	1	1	주엽동강선마을190 3-403	김지환				
31	장항동	525-11	도	18,720	16,980		고양시				
32	장항동	524-28	전	520	520	광주군 퇴촌면 정자리 380-4	이성진	송파구 신천동11-6	수협	근저당 지상권	
계				50,188	47,722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대로3-47호선) : 변경없음

NO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자와의 권리	
1	장항동 667-5	건물	벽돌, 슬라브	223㎡	신경숙	일산구 장항동667-5				대로 3-47
		건물	벽돌, 슬라브	228.4㎡						대로 3-47
		건물	벽돌, 슬라브	223.3㎡						대로 3-47
		건물	벽돌, 슬라브	36.6㎡						대로 3-47
		헨스	철재	15.1m						대로 3-47
		수목	향나무	2주						대로 3-47
		수목	소나무	8주						대로 3-47
		수목	사철나무	2주						대로 3-47
		수목	단풍나무	4주						대로 3-47
2	장항동 667-5	건물	벽돌, 슬라브	223.4㎡	신경숙	일산구 장항동667-5				대로 3-47
		건물	벽돌, 슬라브	221.6㎡						대로 3-47
		부속건물	블럭, 함석	29.9㎡						대로 3-47
		담장	블럭	11.0㎡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1.3㎡						대로 3-47
3	장항동 667-4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57.6㎡	이진철	일산구 장항동480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43.3㎡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14.6㎡						대로 3-47
4	장항동 673-4	컨테이너	철재	0.8㎡	국(농수산부)					대로 3-47
5	장항동 669-5	컨테이너	철재	15.0㎡	국(농수산부)					대로 3-47
		컨테이너	철재	15.0㎡						대로 3-47
		이동통신시설		1주						대로 3-47
6	장항동 669-10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61.9㎡	원순희	백석동1239-2 대방샤인밸리				대로 3-47
		묘목	소나무	420주						대로 3-47
		묘목	주목	120주						대로 3-47
		묘목	은행나무	30주						대로 3-47
		묘목	단풍나무	20주						대로 3-47
		묘목	개나리	5주						대로 3-47
		묘목	향나무	7주						대로 3-47
7	장항동 669-7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18.2㎡	최길현	일산동구 장항동669-1	농협	일산서구 일산동594-28	근저당	대로 3-47
8	장항동 672-3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132.4㎡	국(농수산부)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131.0㎡						대로 3-47

NO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와 의 권리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9.2㎡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5.0㎡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7.0㎡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5.2㎡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3.4㎡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3.2㎡						대로 3-47
		컨테이너	철재	18.0㎡						대로 3-47
9	장항동 664-20	건물	함석	1㎡	이진철	일산구 장항동480				대로 3-47
10	장항동 664-7	건물	함석	180㎡	이진철	일산구 장항동480				대로 3-47
		건물	함석	142㎡						대로 3-47
		건물	함석	12㎡						대로 3-47
		수목	향나무	2주						대로 3-47
		수목	소나무	2주						대로 3-47
		수목	벚꽃나무	5주						대로 3-47
		수목	사철나무	5주						대로 3-47
		수목	단풍나무	2주						대로 3-47
		수목	단풍나무	2주						대로 3-47
11	장항동 664-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79㎡	김묘현	서울중구 신당동 290-1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3㎡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2㎡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5㎡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6㎡						대로 3-47
12	장항동 664-24	컨테이너	철재	18㎡	노승철	일산구 장항동480				대로 3-47
		웬스	철재	115.2						대로 3-47
13	장항동 664-25	건물	함석	85㎡	한성모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658-15				대로 3-47
14	장항동 664-9	건물	함석	82㎡	국(국가정 보원)					대로 3-47
		건물	함석	37㎡						대로 3-47
		건물	함석	34㎡						대로 3-47
		건물	함석	40㎡						대로 3-47
		건물	함석	31㎡						대로 3-47
		건물	함석	18㎡						대로 3-47
		건물	함석	105㎡						대로 3-47
		비닐하우스	철골,천막	71㎡						대로 3-47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대로1-16호선) : 변경없음

NO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와 의 권리	
1	장항동 908	이동통신 시설		1주	농촌공사					대로 1-16
		담장	함석	168.7m						대로 1-16
2	장항동 541-11	건물	함석	59㎡	고양시					대로 1-16
		건물	함석	16㎡						대로 1-16
		담장	블럭	2.2m						대로 1-16
3	장항동 541-11	건물	벽돌, 슬라브	10㎡	고양시					대로 1-16
		컨테이너	철재	10㎡						대로 1-16
		컨테이너	철재	8㎡						대로 1-16
		컨테이너	철재	15㎡						대로 1-16
		부속건물	벽돌, 슬라브	7㎡						대로 1-16
4	장항동 539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1㎡	이경신	일산구 장항동673-16	농협	일산구 일산동594-28	근저당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4㎡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6㎡						대로 1-16
5	장항동 538-7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	김복년	일산구 장항동 531-16	농협	일산구 일산동594-28	근저당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5㎡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9㎡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13㎡						대로 1-16
6	장항동 538-2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1㎡	김기년	일산구 장항동438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4㎡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6㎡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6㎡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6㎡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7㎡						대로 1-16
7	장항동 540-7	부속건물	함석	6㎡	반석 사업	일산동구 장항동 540-7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50		대로 1-16
8	장항동 538-1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2㎡	함익진	일산구 장항동538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3㎡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5㎡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7㎡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8㎡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3㎡						대로 1-16
9	장항동 538-10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8㎡	함익진	일산구 장항동538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6㎡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4㎡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3㎡						대로 1-16

NO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와 의 권리	
10	장항동 525-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9㎡	김명선	일산구 장항동438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1㎡						대로 1-16
11	장항동 525-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3㎡	김경순	일산구 장항동438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4㎡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5㎡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5㎡						대로 1-16
12	장항동 525-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4㎡	김지환	일산서구 주엽동문촌마을1803 -1402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4㎡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2㎡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8㎡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7㎡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1㎡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0㎡						대로 1-16
13	장항동 524-10	헨스	철재	45.9m	고양시					대로 1-16
14	장항동 524-10	헨스	철재	80.2m	고양시					대로 1-16
		컨테이너	철재	25㎡						대로 1-16
		컨테이너	철재	2㎡						대로 1-16
		비닐하우스	철골,천막	16㎡						대로 1-16
		수목	향나무	5주						대로 1-16
15	장항동 525-11	헨스	철재	15.7m	고양시					대로 1-16
		담장	블럭	10.7m						대로 1-16
		이동통신 시설		1주						대로 1-16
		통신제어기		2개소						대로 1-16
16	장항동 518-7	비닐하우스	철골,천막	70㎡	고양시					대로 1-16
		수목	소나무	3주						대로 1-16
17	장항동 518-7	묘목	소나무	40주	고양시					대로 1-16
		컨테이너	철재	15㎡						대로 1-16
18	장항동 507-19	이동통신 시설		1주	농촌 공사	지도면 토당리 345				대로 1-16
		헨스	철재	22.0m						대로 1-16
19	장항동 906	수목	소나무	39주	고양시					대로 1-16
20	장항동 903	수목	소나무	16주	고양시					대로 1-16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대로1-17호선) : 변경(당초)

NO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와 의 권리	
1	장항동 673-4	건물	함석	4.4㎡	국(농수산 부)					대로 1-17
		수목	감나무	1주						대로 1-17
		수목	향나무	1주						대로 1-17
		수목	은행나무	2주						대로 1-17
		수목	소나무	2주						대로 1-17
		수목	단풍나무	3주						대로 1-17
		수목	개나리	150주						대로 1-17
2	장항동 673-4	부속건물	함석	21.7㎡	국(농수산 부)					대로 1-17
		부속건물	함석	8.7㎡						대로 1-17
		컨테이너	철재	20.8㎡						대로 1-17
		컨테이너	철재	21.8㎡						대로 1-17
3	장항동 673-4	철크스	철재	228.2m	국(농수산 부)					대로 1-17
4	장항동 673-4	철크스	철재	117.5m	국(농수산 부)					대로 1-17
5	장항동 672	건물	함석	118.3㎡	송진옥	풍동573-4				대로 1-17
		건물	함석	145.6㎡						대로 1-17
		건물	함석	20.7㎡						대로 1-17
6	장항동 525-7	비닐하우스	철골, 천막	45.5㎡	정동희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1311-1403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9-1	근저당 지상권	대로 1-17
7	장항동 524-23	건물	함석	149.8㎡	서길석	일산구 장항동524-24				대로 1-17
		건물	함석	86.0㎡						대로 1-17
		철크스	철재	19.8m						대로 1-17
8	장항동 538-11	컨테이너	조립식판넬	15.0㎡	함익진	일산구 장항동538				대로 1-17
		컨테이너	조립식판넬	15.0㎡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4.2㎡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2.2㎡						대로 1-17
9	장항동 524-24	건물	벽돌, 아스팔트필트	81.0㎡	서길석	일산구 장항동524-24				대로 1-17
		부속건물	함석	27.0㎡						대로 1-17
		철크스	철재	41.2m						대로 1-17
10	장항동 524-7	건물	함석	195.0㎡	조현주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524- 2402				대로 1-17
		건물	함석	18.0㎡						대로 1-17
		컨테이너	함석	12.0㎡						대로 1-17
		철크스	철재	64.3m						대로 1-17
11	장항동 523-17	건물	목재	8.2㎡	이은구	일산구 장항동529-2	농협	남원시 향교동223	근저당	대로 1-17
		건물	목재	6.6㎡						대로 1-17

NO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와 의 권리	
		헨스	철재	70.6m						대로 1-17
12	장항동 523-21	헨스	철재	36.5m	이은구	일산구 장항동529-2	농협	남원시 향교동223	근저당	대로 1-17
13	장항동 523-20	컨테이너	철재	7.5㎡	이은구	일산구 장항동529-2	농협	남원시 향교동223	근저당	대로 1-17
		헨스	철재	55.5m						대로 1-17
14	장항동 522-2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8.6㎡	이용전	서대문구남가좌동23 7-308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5.5㎡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8.0㎡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9.0㎡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8㎡						대로 1-17
15	장항동 522-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3.0㎡	국(농림부)					대로 1-17
		담장	함석	40.2m						대로 1-17
16	장항동 522-2	컨테이너	철재	9.5㎡	국(농림수 산부)					대로 1-17
		헨스	철재	20.3m						대로 1-17
17	장항동 522-3	수목	대추나무	1주	국(농림수 산부)					대로 1-17
		수목	벗나무	1주						대로 1-17
		수목	은행나무	1주						대로 1-17
18	장항동 522-3	건물	철골, 슬라브	23㎡	국(농림수 산부)					대로 1-17
19	장항동 673-26	건물	함석	127㎡	박종호	마포구신공덕동 161신공덕3차삼성레 미안아파트 302-1501	신협	일산동구 마두동799	근저당	대로 1-17
		건물	함석	132㎡						대로 1-17
		담장	블럭	6.7m						대로 1-17
20	장항동 673-24	건물	함석	194㎡	이동희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46-2	우리 은행	중구 회현동1가203		대로 1-17
		건물	함석	26㎡						대로 1-17
		건물	함석	165㎡						대로 1-17
		건물	함석	2㎡						대로 1-17
		담장	블럭	17.7m						대로 1-17
21	장항동 673-21	건물	함석	49㎡	이옥로	강서구등촌동631-15 홍익연립 15-203				대로 1-17
22	장항동 673-0	건물	벽돌,슬라브	179㎡	전재일	일산구 장항동673				대로 1-17
		건물	벽돌,슬라브	146㎡						대로 1-17
		컨테이너	철재	17㎡						대로 1-17
		담장	블럭	16.0m						대로 1-17
23	장항동 673-19	건물	벽돌, 아스팔트필트	375㎡	최정균	일산동구 장항동673-19	외환은행	서울중구 을지로2가181	근저당	대로 1-17
24	장항동 667-6	컨테이너	철재	18㎡	국(농림수 산부)					대로 1-17
		헨스	철재	72.0m						대로 1-17

NO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와 의 권리	
		수목	미르나무	1주						대로 1-17
25	장항동 671-4	건물	벽돌, 아스팔트필트	1㎡	최성열	일산구 장항동441				대로 1-17
	장항동 671-13	현관	철재새시	16㎡	최성열	일산구 장항동441				
		대문	철재	1식						
		개나리		5주						
		철쭉		30주						
		회양목		1주						
		사철나무		24M						
		단풍나무		1주						
		앵두나무		1주						
		산수유		1주						
		장미		6주						
		잔디		28㎡						
26	장항동 671-5	건물	함석	179㎡	최성열	일산구 장항동441				대로 1-17
	장항동 671-14	건물	경량철골구조	190㎡						
		부속건물	함석	1㎡						대로 1-17
		바닥	Con'c	330㎡						
		웬스	철재	26.0m						대로 1-17
		화장실	조립식	21㎡						
		세콤시설	KT텔레캅	1식						
27	장항동 671-1	건물	철골,슬라브	156㎡	최낙영	일산구 장항동568-7				대로 1-17
	장항동 671-1	건물	철골,슬라브	132㎡	고 양 시					
		건물	철골,스레트	75㎡						대로 1-17
		건물	블록, 스레이트지붕	66.24㎡	고 양 시					
28	장항동 522-3	건물	목재	96㎡	국(농림수 산부)					대로 1-17
		부속건물	조립식판넬	4㎡						대로 1-17
29	장항동 44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6㎡	최영식	일산구 장항동441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9㎡						대로 1-17
		컨테이너	철재	18㎡						대로 1-17
		부속건물	목재	4㎡						대로 1-17
30	장항동 522-3	건물	벽돌, 아스팔트필트	102㎡	국(농림수 산부)					대로 1-17
31	장항동 516-7	컨테이너	철재	19㎡	방규선	일산동 1103 후곡마을 1110-405	농협	일산서구일산동594- 28	근저당	대로 1-17
32	장항동	묘목	사과나무	32주	최영식	일산구				대로

NO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와 의 권리	
	674-1					장항동441				1-17
33	장항동 674-2	건물	합석	5㎡	방규정	성사동 494-5 삼화아파트 비-208				대로 1-17
34	장항동 674-3	부속건물	조립식판넬	32㎡	방규정	성사동 494-5 삼화아파트 비-208				대로 1-17
		부속건물	조립식판넬	7㎡						대로 1-17
		부속건물	조립식판넬	8㎡						대로 1-17
		컨테이너	철재	15㎡						대로 1-17
		웬스	철재	54.7m						대로 1-17
35	장항동 674-3	묘목	배나무	95주	방규정	성사동 494-5 삼화아파트 비-208				대로 1-17
		묘목	밤나무	7주						대로 1-17
36	장항동 516-22	묘목	은행나무	7주	방미영	덕양구성사동 724신원당마을 705-106				대로 1-17
37	장항동 656-2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74㎡	고숙자	고양시 일산읍 일산리 산 881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45㎡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34㎡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94㎡						대로 1-17
	장항동 656-2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57㎡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3㎡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99㎡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3㎡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1㎡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78㎡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0㎡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천막	67㎡						대로 1-17
		웬스	철재	16.0m						대로 1-17
38	장항동 656-41	건물	조립식판넬	43㎡	김웅	일산구 장항동656-41				대로 1-17
		웬스	철재	47.7m						대로 1-17
39	장항동 656-16	건물	조립식판넬	150㎡	전보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 302호				대로 1-17
		웬스	철재	101.0m						대로 1-17
40	장항동 656-28	묘목	소나무	4주	전보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 302호	새마을금 고	강서구등촌동526-3	근저당 지상권	대로 1-17
		묘목	단풍나무	4주						대로 1-17
		묘목	솔나무	3주						대로 1-17
		묘목	능근나무	2주						대로 1-17
41	장항동 656-7	건물	합석	39㎡	송지영	일산구 장항동393				대로 1-17
42	장항동 656-4	건물	조립식판넬	164㎡	김태일	덕양구 대장동 274				대로 1-17

NO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와 의 권리	
		부속건물	조립식판넬	62㎡						대로 1-17
		웬스	철재	56.6m						대로 1-17
		대문	기와	6.0㎡						대로 1-17
		담장	벽돌,기와	11.5m						대로 1-17
43	장항동 656-39	부속건물	함석	16㎡	박종수	서대문구 홍은동 412-26 지층1				대로 1-17
		부속건물	함석	6㎡						대로 1-17
		웬스	철재	14.6m						대로 1-17
44	장항동 656-36	건물	함석	91㎡	박종수	서대문구홍은동412- 26지층1				대로 1-17
		건물	함석	79㎡						대로 1-17
45	장항동 655-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86㎡	유재영	일산동 543-12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86㎡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86㎡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86㎡						대로 1-17
	장항동 655-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15㎡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87㎡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0㎡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0㎡						대로 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						대로 1-17
46	장항동 447-25	웬스	철재	104.5m	농촌 공사	지도면 토당리345				대로 1-17
		웬스	철조망	90.0m						대로 1-17
47	장항동 655-15	묘목	단풍나무	52주	유한덕	마두동 950-3				대로 1-17
48	장항동 655-14	건물	함석	204㎡	유한덕	마두동 950-3	농협	일산서구 일산동594-28	근저당	대로 1-17
		건물	함석	118㎡						대로 1-17
		부속건물	함석	43㎡						대로 1-17
49	장항동 655-1	건물	함석	201㎡	유한덕	마두동 950-3				대로 1-17
		건물	함석	141㎡						대로 1-17
		부속건물	함석	34㎡						대로 1-17
		이동통신 시설		1주						대로 1-17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대로1-17호선) : 변경(변경)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 와의 관리	
1	장항동 524-30	건물	일반철골조	198㎡	서길석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24-24				
		건물	일반철골조	198㎡						
		정화조		1식						
		세콤		1식						
		간판	지주형	1식						
		간판	가로형	1식						
		전기	3Kw	1식						
		닭장		1식						
		은행나무		2주						
		대추나무		1주						
		창고	함석	32.0㎡						
2	장항동 524-30	건물	경량철골조	77.44㎡	서길석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24-24				
		창고	판넬	12.0㎡						
		바닥	콘크리트	250.0㎡						
		이전비	장항타이어	1식						
		웬스	철재	58.4㎡						
3	장항동 524-29	건물	철골조	198.0㎡	조현주	서울도봉구도봉로136길 28 524동2402호				
		건물	철골조	99.0㎡						
		메타세과 이어		6주						
		향나무		3주						
		대문		1식						
		웬스		60m						
4	장항동 523-25	사무실	4.0×3.0	12.0㎡	강신성 (대신 지계 차)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79-33				
		창고	3.0×4.0	12.0㎡						
		간판		2식						
		집기물품		1식						
5	장항동 523-27	파고라	3.3×2.0	6.6㎡	이은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0-5				
		웬스	철재	70.6m						
		조경시설 물		3식						

6	장항동 523-29	느티나무		45주	이은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0-5				
		주목나무		5주						
		비타민나 무		30주						
7	장항동 523-28 -30	헨스		50m	임성순 외5인	일산동구 중산동 1731-3				
		대문		1식						
		컨테이너	3.0×2.5	1식						
		담장	디자인헨스	56m						
		나무		10주						
		바닥	콘크리트	250.0㎡						
8	장항동 522-35 -36	비닐하우 스	6.0×48.0	288.0㎡	이응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22-35				
			6.0×51.0	306.0㎡						
			6.0×53.0	318.0㎡						
			6.0×56.0	336.0㎡						
			6.0×22.0	132.0㎡						
			4.5×11.0	49.5㎡						
		창고	4.5×10.0	45.0㎡						
		나무		35주						
		경계석		31m						
		계사		12.0㎡						
		등나무		1주						
		사철나무		3주						
		대추나무		1주						
		복숭아나 무		1주						
9	장항동 673-26	휴업보상	그린마트	1식	정복녀	고양시 일산동구 673-26				
		화장실		1식	유문생	고양시 일산동구 673-26				
		보일러		1식						
		샷시		7.0㎡						
10	장항동 673-26	건물	경량철골조	103.5㎡	박종호	마포구신공덕동신공덕3차 삼성레미안아파 302-1501				
		건물	2층	103.5㎡						
		담장	블럭조	7m						

		감나무		1주						
		목련나무		1주						
		은행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사철나무		1주						
		화단		1식						
		철계단		1식						
		가건물	철골조천막	76.0㎡						
		가건물	철골조	56.0㎡						
11	장항동 673-21	컨테이너		3식	강경석 (원일 자동 차)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2				
		작업장	철골조	165.0㎡						
		철계단		1식						
		창고	철판	15.0㎡						
		창고	판넬	6.0㎡						
		창고	철골조	12.0㎡						
		호이스트		1식						
		담장	블록	12m						
12	장항동 673-19	휴업보상	현대슈퍼	1식	이애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19				
		컨테이너		1식						
		알미늄샷 시		15.0㎡						
13	장항동 673-19	휴업보상	장항골남원 추어탕	1식	신변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19				
		컨테이너	7.0×3.5	1식						
14	장항동 673-19	휴업보상	자유로카센 타	1식	송병석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19				
		리프트		2개						
15	장항동 673-19	건물	철근콘크리 트	343.45 ㎡	최정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19				
		건물	일반철골	312.9㎡						
		건물	철근콘크리 트	33.0㎡						
		향나무	3주							
16	장항동 673	건물	철근콘크리 트	101.51 ㎡	전재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				
		캐노피		90.0㎡						
		주목		2주						
		칠평나무		14주						

		소나무		1주						
		휴업보상		1식						
17	장항동 673-18	지주간판		1식	박근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18				
18	장항동 522-6	비닐하우스	6.6×6.5	42.9㎡	이진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3-26				
		감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약나무		1주						
		잣나무		1주						
		화단		1식						
19	장항동 522-6	지주간판	철원양평해 장국	1식	홍인옥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4				
20	장항동 522-6	지주간판	장군순대국	1식	마미정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4				
21	장항동 522-6	지주간판	유니부동산	2식	이권상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4				
22	장항동 522-6	지주간판		1식	이명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4-24	현 철	고양시 일산동 구 장항동 534-1	벤처부 동산	
23	장항동 441-1	건물	조적조	111.54 ㎡	최영식	고양시 일산동구 441-1				
		파고라		16.0㎡						
		차고	3.0×6.5	195.5㎡						
		대문		1식						
		자재야적		1식						
		창고	비닐하우스	35.5㎡						
		수목		10주						
24	장항동 674-6	은행나무		3주	최영식	고양시 일산동구 441-1				
		잣나무		2주						
		메타세과 이어		2주						
		향나무		1주						
		복숭아		25주						
		대추나무		8주						
		건사		15.0㎡						
25	장항동 656-41	건물	샌드위치판 넬	132.0㎡	김웅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6-41				
		모과나무		1주						
		살구나무		1주						
		은행나무		6주						
		대추나무		1주						
		소나무		1주						
		등나무		2주						

		웬스		48.6m						
26	장항동 656-16	건물	조립식판넬	149.76 ㎡	전보경	서초구 서초동 1483-18				
		수목		30주						
		대문		1식						
		웬스		103m						
27	장항동 656-53	웬스	철재	7m	송원섭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6-7				
		수목		9주						
28	장항동 656-52	벚나무		8주	(재)경 기도향 교	수원시 장안구 장자동 46-3				
29	장항동 656-47	건물	경량철골	318.32 ㎡	김태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6-4				
		담장	돌담	23m						
		웬스		56.6m						
		대문		1식						
		석탑		1개						
		석등		2개						
		잣나무		3주						
		소나무		4주						
		단풍나무		6주						
		감나무		2주						
		사철나무		1주						
		라일락		6주						
		자두나무		2주						
		테크	2.0×11.0	22.0㎡						
		보안등		5식						
		바닥	벽돌	26.4㎡						
30	장항동 656-36	창고	함석	16.3㎡	이시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6-36				
		창고		12.0㎡						
		건사	벽돌조	36.0㎡						
		가추	천막	45.0㎡						
		창고	목재	20.0㎡						
		차고	함석	20.0㎡						
		건사		3식						
31	장항동 656-36	건물	경량철골조	84.8㎡	박종수	서대문구 홍은동 412-26				
		건물	경량철골조	74.9㎡						
		웬스		71.5m						
		창고	판넬조	6.3㎡						
		밤나무		1주						
		은행나무		1주						

		매실		1주						
		박태기		1주						
		포도나무		1주						
		자두나무		3주						
		대추나무		1주						
		감나무		1주						
		앵두나무		1주						
		개나리		5m						
		라일락		1주						
		자작나무		1주						
		느티나무		5주						
		철쭉		10주						
32	장항동 655-6	비닐하우스	5.5×90.0	495.0㎡	이경식	덕양구 주교동 619-5 그 린빌				
		비닐하우스	5.5×90.0	495.0㎡						
		비닐하우스	5.5×90.0	495.0㎡						
		비닐하우스	5.5×90.0	495.0㎡						
		비닐하우스	5.5×90.0	495.0㎡						
		창고(관 리사)	5.0×17.5	87.5㎡						
		창고	4.5×4.5	20.25㎡						
		창고	4.5×4.5	20.25㎡						
		창고	4.5×4.5	20.25㎡						
		창고	3.0×5.0	15.0㎡						
33	장항동 449-5	가건물	3.0×6.0	18.0㎡	최정섭	일산서구주엽동51 강선프라자				
34	장항동 655-20	건물	일반철구조	198.0㎡	유한덕	일산동구마두동787 강촌마을	017-336-8313			
		건물	일반철구조	198.0㎡						
		건물	일반철구조	33.0㎡						
35	장항동 655-25	건물	경량철골조	198.0㎡	유한덕	일산동구마두동787 강촌마을				
		건물	경량철골조	198.0㎡						
		건물	경량철골조	33.0㎡						
		콘크리트		869.0㎡						
36	장항동 655-26	단풍나무		70주	유한덕	일산동구마두동787 강촌마을				
		느티나무		40주						

		매실		50주						
		앵두나무		50주						
		철죽		250주						
		구상나무		10주						
		전기시설	가공, 지 중	1식						
		상수도		1식						
		정화조		4개						
		웬스		103m						
		대문		2식						
37	장항동 449-5	기지국	10×3	1식	한국전 파기지 국	송파구방이동149-4 순창빌딩				
38	장항동 673-91	건물	경량철골조	160.0㎡	이동희 외2인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이 강리 346-2				
		건물	2층	55.0㎡						
		철계단		2식						
		창고	판넬조	16.5㎡						
		컨테이너		1식						
		안테나		1식						
		화장실		3.3㎡						
39	장항동 673-89	건물	경량철골조	109.7㎡	이옥로 외 1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1-9				
		건물	2층	42.7㎡						
		창고		7.3㎡						
		철계단		2식						
		화장실		4.0㎡						
		가추		2식						



고양시 고시 제2014-3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5호선(샛말취락도로 확장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101~585-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3-125호선(샛말취락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절차 및 같은법 제92조 규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17.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 작성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101~585-6번지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샛말취락(중로3-125호선)도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3	125	12.0	261		
금회 시행	중로	3	125	12.0	261	3,147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일 ~ 201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조서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같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서 : “계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리	지 번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도내동	783-14	임	227	7	고양시	국				
2	"	783-17	임	14	5	고양시	국				
3	"	783-8	임	453	5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57-3	고영근				
4	"	908	도	69	69	국토교통부	국				
5	"	산97	임	1,388	339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120-1	연안김씨 직강공파 종회				
6	"	584-8	임	5,640	132	고양시	국				
7	"	584-10	임	1,500	469	고양시	국				
8	"	584-2	임	1,799	258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133(도내동)	한명자				
9		584-4	임	661	229	고양군 화전읍 화전리 876	최도혁				
10	"	584-7	임	664	300	고양시 화전동 876	박순식				
11	"	581-3	임	992	23	서울시 동대문구 종암동 43	박세진				
12	"	783-18	임	16	13	고양시	국				
13	"	783-16	임	17	17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120-1	연안김씨 직강공파 종회				
14	"	783-19	전	396	16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	인동장씨 황상파효 남손종중 회				
15	"	산90-1	임	40,432	959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16-567	연안김씨 직강공파 종회				
16	"	584-3	임	2,387	2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1-159 프린스필라 405	김주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3-3	고양시산 림조합	근저당/ 지상권	
17	"	584-6	임	694	6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1 무원마을 205-1003	김홍진 (1/4)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43-1, 1층	김기태 (1/4)				
						서울 마포구 신수동 89-30	김진표 (1/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41-4	김진용 (1/4)				
18	"	585-6	임	376	40	국방부	국				
합계				57,725	3,147						

○ 지장물 조서

-지장물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수량 (EA)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덕양구 도내동	783-19	가건물	합석	1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120-1	연안김씨직강 공파종회	
2	"	산97	가건물	합석	1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120-1	연안김씨직강 공파종회	
3	"	산97	비닐하우스		1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120-1	연안김씨직강 공파종회	
4	"	산90-1	비닐하우스		1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16-567	연안김씨직강 공파종회	
5	"	584-8	컨테이너		1			
6	"	584-2	컨테이너		2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133(도내동)	한명자	
합계					7			

-한전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27	좌		한국전력공사	
2	"	STA 0+103	중앙		"	
3	"	STA 0+146	좌		"	
4	"	STA 0+185	좌		"	

-보안등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70	좌		고양시	

-체신맨홀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2	우		KT	

-우수맨홀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구조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4	우		고양시	

-체신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14	좌		KT	
2	"	STA 0+43	좌		"	
3	"	STA 0+69	좌		"	
4	"	STA 0+88	좌		"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주민공람 · 공고

우리시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2014. 9.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같은 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람)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만약, 아래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시 도시재생과로 불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17.
고 양 시 장

1. 사업명 :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공람기간 : 2014. 10. 17. ~ 11. 05 09:00~18:00(14일간,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3. 공람장소
 - 고양시청 별관 3층 도시재생과 회의실(도시재생팀)
 -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정종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3번길 60 2층(주교동 568-13) (☎031-968-2125)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착공일 ~ 입주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현황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원	81,091㎡	80,992.5㎡	△98.5㎡	측량결과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기준

※ 지적공사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원당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중 원당1구역 구역면적 경미한 변경 진행이며, 촉진계획 변경 후 사업시행인가 처리(예정)

■ 사업시행계획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2,738세대

(단위:세대수, 전용면적 기준)

구분	총누계	분 양 주 택								임대주택		
		누계	39㎡	46㎡	55㎡	59㎡	72㎡	84㎡	100㎡	누계	35㎡	59㎡
세대수	2,738	2,229	190	307	266	696	438	297	35	509	466	43

- 층수 : 아파트 16개동, 지하3층/지상 35층

구분	면적	위치	주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획지	80,992.5㎡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30,837.43㎡	14.96%	277.38%	지하3층~ 지상35층
정비기반 시설	42,6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공공청사 : 23,013.1㎡ 공원, 녹지, 공지: 19,679.8㎡ 	-	-	-	-

7.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6	25~30	주간선	2,165 (156)	대3-28 원당동산48-9	광3-7 성사동152-3	일반 도로		경고제381호 98-09-15	
기정	중로	1	원1	20	집산 도로	1,037 (215)	대3-26 주교동633	대3-26 주교동26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중로	2	원1	15	국지 도로	946 (244)	중2-58 주교동297-8	중1-원1 주교동565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소로	1	원1	10	국지 도로	91 (87)	중1-원1 주교동628	연결녹지5 주교동573-1 5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소로	1	원2	10	국지 도로	205	대3-26 성사동산1-5	중1-원1 주교동625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소로	2	원1	8	국지 도로	506 (398)	대3-26 주교동624	중2-원1 주교동551	일반 도로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음악	근린공원	주교동 559-1일원	17,942 (14,104)	증) 54	17,996 (14,158)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주교동 630 일원	9,508 (599)	-	9,508 (599)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주교동 26-17 일원	990	-	990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주교동 561 일원	2,250	-	2,250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주교동 572 일원	1,739	-	1,739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주교동 313-8 일원	906 (172)	-	906 (172)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공청사	복합 커뮤니티	주교동 572-4 일원	3,330	-	3,330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9. 사업시행계획 내용

-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계획, 임대주택건립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10. 기타

- 사업시행계획서, 건축설계도서를 공람기간내 고양시청 제1별관 3층 도시재생과(☎031-8075-3173),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031-968-2125)에 비치
-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은 근무시간 내(09:00~18:00) 열람 가능하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 제출
 -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최종 사업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심의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의견서

고양시 공고 제2014-1381호(2014. 10. 17)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주민공람·공고 관련)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제출일자 : 2014. . .

○ 제출의견

<p>.....</p> <p>.....</p> <p>.....</p> <p>.....</p> <p>.....</p> <p>.....</p> <p>.....</p> <p>.....</p> <p>.....</p>
--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의 공 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4년도 소하천(효릉천) 정비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고양시장 (직인)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섬말천 (효릉천)	섬 말 천 (효릉천) 정비공사	고양시 덕 양 구 원 당 동 199번지	고양시 덕 양 구 원 당 동 201-52 번지	322	322		2014.	2015.	재해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	용지 조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첨”
4. 공사 관계도면 및 서류는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14일간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 환경녹지과(031-8075-5255), 생태하천과(031-8075-2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